

#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

김 창 길	선임 연구위원
정 학 균	부 연구위원
김 태 훈	위촉 연구위원
문 동 현	위촉 연구위원
안 병 일	고려대학교 조교수

## 연구 담당

김창길	선 임 연구 위 원	연구 총괄, 영향분석 종합 및 대응방향
정학균	부 연구 위 원	동등성 개념과 주요 이슈 분석
김태훈	위 축 연구 위 원	동등성 도입의 국내시장 영향 분석
문동현	위 축 연구 위 원	주요국의 동등성 사례 분석
안병일	고려대학교 조교수	동등성 도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 머 리 말

---

정부는 상대국에서 유기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을 허용해 주는 ‘표시제’를 2012년까지 운영하고, 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 수입 가공원료의 원활한 조달, 보다 저렴한 유기식품의 공급 등을 위해 유기식품의 동등성 인정 근거 규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유기인증식품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동등성 인정’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유기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의해 국내 유기식품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기인증제도의 동등성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속에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 유기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보고서는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에 관한 정책과제의 최종결과물이다. 동등성 제도 도입이 유기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게임나무, 이해당사자들의 편익 비교, 수입비용의 유기인증비용 비중 등을 계산하였다. 또한 식물방역법을 중심으로 주요 품목별 검역 및 수입조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련제도의 개편, 동등성 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등을 동등성 추진에 따른 대응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유기인증제도 동등성 도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 및 협의회에 참석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가공업체 관계자 분들과 동등성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 연구자문위원으로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인하대학교 박민규 교수, 한국식품연구원 김명호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 요 약

---

-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유기가공식품의 교역확대에 대비하여 동등성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전적 영향분석은 정책담당자와 친환경농업단체 및 유관기관의 중요한 관심사임. 이 연구는 유기식품인증제도 동등성 추진에 따른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유기식품산업 시장구조를 살펴보면(2008년 기준) 전체 4,043억 원 가운데 신선이 46.6%, 가공이 53.4%를 차지하고 있음. 국산의 비중을 보면 신선의 경우 83%인데 비해 가공의 경우 16.1%로 국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산물 수입은 2006년 6.8천톤에서 2009년 10.3천톤, 2010년 13.8천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유기가공식품은 대부분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물량이며 수입량은 2006년 11천톤, 2008년 18천톤, 2009년 13천톤으로 나타남. 2009년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은 금액기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동등성 제도 도입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가공식품 표시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되었으나 동등성 제도가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해서 까지도 관련이 되어 유기농산물에 대한 동등성 관련 이슈가 부각됨. 유기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표시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동등성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유기식품산업과 유기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

- 동등성 관련 국제기준을 검토한 결과 WTO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과 유기제품에 관한 국제표준인 CODEX에 동등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EU,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인증제도에 동등성 근거가 있음.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간 상호동등성 협정, 미국과 일본 간 수출협정, 캐나다와 EU간 상호동등성 협정 등 사례들이 있음.
- 동등성 제도 도입이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기농산물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게임나무(Game tree), 이해당사자들의 편익 비교, 유기농산물의 경우 수입비용에서 유기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계산하였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유기농산물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음.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동등성 제도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 표시제와 제도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등성 제도가 도입된다 하여도 수입량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제도와 동등성제도를 비교할 경우 인증제도에 의해 추가되는 고정비용은 이윤극대화 경제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수입량 증가에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됨.
-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예상되는 대응과 이에 따른 정부의 최적 선택을 분석한 결과,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경우 유기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자들의 경우 동등성 인정과 불인정은 무차별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과적으로 통상문제 등 기타 사회적비용(이익)을 고려할 때 정부의 동등성 제도 도입은 현실적인 여건에서 최적의 선택으로 분석됨.
- 동등성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다원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인증제도에 의해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수입업자가 한국으로의 수입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때에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자의 혜택과 동등성

- 을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정부의 최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유기농산물의 경우도 인증제도로 추가되는 고정비용은 이윤극대화 경제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 또, 미국산 유기포도를 수입할 경우의 예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비용에서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총 수입 규모가 100톤일 때 kg 당 평균 수입비용에서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따라서 인증제도와 동등성제도를 비교한 결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유기농산물 수입의 시장조건을 살펴본 결과 밀, 콩, 옥수수 등 곡물류의 경우 현재의 수입물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므로 동등성 제도 도입에 따른 수입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과일류는 뉴질랜드로부터 포도, 감귤, 감이 일부 수입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뉴질랜드로부터 이러한 품목의 수입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채소류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고관세로 수입이 어려워 보이고, 배추, 무, 당근, 상추 등 신선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나 소비자들이 중국산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인증제도하에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신선유기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으로 일방적 동등성제도 하에서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대만의 수입품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신선유기농산물로는 포도, 체리, 딸기, 블루베리, 사과 등 5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검역조건을 고려하면 수입가능 품목은 포도와 블루베리로 한정됨.

- 현재 유기농식품산업의 국내 기반은 취약한 상태에 있고, 특히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유기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유기농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어느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향후 해당 상대국과의 동등성 협정을 체결에 앞서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특히 상호 동등성 인정의 협정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내 담당부서의 전담인력의 확충과 정부,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기식품동등성심의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각 관련주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동등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ABSTRACT

## Analysis of the Impact of Introducing an Equivalence System for Organic Food Certification

In order to be prepared for expanding trade of processed organic food led by changes in domestic and overseas conditions, a major interest of concerned policy makers and environment-friendly farming unions and agencies is pre-analysis of the impact of introducing an equivalence system.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esent systematic solu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pecific impacts on the organic farming and organic food market in Korea, in promoting equivalence with the organic food certification system.

This report consists of eight chapters. Chapter 1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a review of prior studies, and the method and scope of this study. Chapter 2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 of organic agricultural food. Chapter 3 describes the current organic food certification system and presents the equivalence system. Chapter 4 describes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introducing equivalence of organic food,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WTO/TBT, CODEX, etc., and key issues related to introducing equivalence. Chapter 5 describes cases of equivalence agreement for organic products, the organic product certification system and cases of approving equivalence in major countries. Chapter 6 describe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mpact resulting from promoting equivalence, using theoretical models and game trees, etc. Chapter 7 describes solutions for promoting equivalence. Lastly, Chapter 8 provides a summary and conclusion.

An equivalen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the processed food labeling system based on the Food Hygiene Regulation. However, since the equivalence system is involved in agricultural products as well as processed food, issues related to equivalence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have emerged. There are two opposing points of view on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c food industry, one of which is that the equivalence system is essential as an alternative to the labeling system and the other of which emphasizes the negative aspects of the equivalence system on the organic food industry in Korea.

In review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quivalence include those in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 to Trade of WTO and CODEX, which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products. Equivalence is specified in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EU, the USA, Canad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etc. As of 2011, there are cases of the mutual equivalence agreements between the US and Canada, the US and Japan, and Canada and the EU.

For analyzing the impact of the introduced equivalence system on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organic food, a Game Tree was used for showing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for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benefits for parties concerned were compared, and the cost of organic certification which accounted for a portion in the cost of import was calculated for the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The feasibility for importing major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currently produced in Korea from other countries was also reviewed.

Sinc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abeling system currently employed and the equivalence system in terms of regulations for processed organic food, it was shown that there would not be significant change in the volume of import if the equivalenc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comparis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with the equivalence system it was determined that the effect by the fixed expenses added by the certification system on the increased volume of import was not great in terms of economic action for maximized profits.

The result of analyzing predicted response of importers who import processed organic food and government's optimum selection showed that the best solution for the importers is to get organic certification to import processed organic food. It was shown that some of the people who produce processed organic food in Korea approved and some did not approve of equivalence. As a result, it is predi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equivalence system by the government is inevitable, considering other social costs (profits), e.g., trade pressure.

Unless the equivalence system is introduced, a high degree of import costs would be needed by means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processed organic food produced with various raw materials, so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importers may give up importing to Korea. In that case, the government will have to compare the benefits of producers who produce processed organic food in Korea with the social costs due to no introduction of

equivalence to make an optimum selection.

In terms of economic actions for maximized profits, the fixed cost added by the certification system will not have an impact on the volume of import for the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alysis of the case of having imported organic grapes from America showed that the cost for certification accounted for a very small portion in the entire import cost. That is, assuming that the total imported products were 100 tons, the cost for certification in the average import cost per kg accounted for 1%, implying a tiny proportion. Therefore, comparis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with the equivalence system showed an insignificant impact on the volume of import.

Inspection of the market condition of importing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showed that, since the current import volume meets the demand for the grains, e.g., barley, beans, corn, etc., it is considered that changes in the import volume resulting from introducing the equivalence system would be negligible. Fruits, e.g., grapes, mandarins and persimmons, are likely to be imported from New Zealand. Importing vegetables is prohibited from most countries, pursuant to the Plant Protection Act. It is also difficult to import vegetables, e.g., chillies, garlic, onions, etc., because of high customs fees. It is possible to import fresh vegetables, e.g., Chinese cabbages, white radishes, carrots, lettuces, etc., from China, but consumers do not prefer those imported from China. It thus seems that changes in the import volume for the fresh vegetables would be negligible.

No fresh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re currently imported from America, pursuant to the certification system. Therefore, as an alternative, products imported unilaterally by Japan and Taiwan, which are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were reviewed. Exemplary fresh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that can be exported to Korea were comprised of the five products of grapes, cherries, strawberries, blueberries, and apples. However, it was shown that importable products were only grapes and blueberries as a result of quarantine inspection.

The current base of the organic agro-food industry in Korea is not strong, and processed organic food highly depends on imported raw materials to produce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s are thus predicted if the raw materials are not smoothly imported for any reas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organic agro-food industry, to integrate the dualized certification system into one system, and to enact applicable provisions to minimize the loss of any parties concerned.

Thorough preparation is required before making the equivalence agreement with counterpart countr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cure more manpower in charge in the responsible divisions in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o install the Organic Food Equivalence Deliberation Commission (provisional) organized by the government, producer groups, research institutions, consumer groups, etc., and to establish strategies for minimizing risk-bearing resulting from introduction of the equivalence system through appropriate role sharing among related subjects, and for maximizing the policy effect.

Researchers: Chang-Gil Kim, Hak-Kyun Jeong, Tae-Hoon Kim, Dong-Hyun  
Moon and Byeong-II Ahn  
Research period: 2011. 8. ~ 2011. 10.  
E-mail address: changgil@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배경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연구방법과 범위 ..... 4

### 제2장 유기농식품 산업의 현황

1. 유기식품산업의 시장구조 ..... 6
2. 유기식품의 생산현황 ..... 8
3. 유기식품의 수입현황 ..... 12

### 제3장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현황과 동등성 제도

1.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개요 ..... 19
2.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 20
3.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21
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동등성 ..... 26

### 제4장 유기식품의 동등성 개념과 주요 이슈

1. 동등성의 의미 ..... 28
2. 유기식품의 동등성 도입 배경 ..... 30
3. 동등성 관련 WTO/TBT, CODEX 등 국제기준 ..... 34
4. 동등성 도입 관련 주요 이슈 ..... 36

### 제5장 주요국의 유기식품 동등성 사례

1. 유기제품 동등성협정의 주요 사례 ..... 40

2. 주요국의 유기인증제도와 동등성 인정 .....	46
<b>제6장 동등성 추진에 따른 영향 분석</b>	
1. 국내 유기가공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 .....	63
2. 국내 유기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	79
3. 기타 관련분야 영향 .....	99
<b>제7장 동등성 추진에 따른 대응방향</b>	
1.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 .....	101
2. 외부 여건변화를 반영한 관련제도의 개편 .....	103
3. 동등성 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	104
4. 관련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	105
<b>제8장 요약 및 결론</b> .....	107
부록 .....	111
참고문헌 .....	117

## 표 차 례

---

### 제2장

표 2- 1. 국내 유기식품 시장규모(2008년) .....	7
표 2- 2. 연도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	8
표 2- 3. 품목별 유기농산물 생산현황 .....	9
표 2- 4.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적 .....	11
표 2- 5.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인증실적(2010년 기준) .....	12
표 2- 6. 최근 3년간 수입현황 .....	13
표 2- 7. 국가별 유기농 수입현황(금액순) .....	14
표 2- 8. 품목별 유기농 수입현황(금액순) .....	15
표 2- 9.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현황 .....	16
표 2-10. 인증업체별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09.6~'10.6) .....	17
표 2-11.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수입현황('06~'08 평균) .....	18

### 제3장

표 3- 1.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	21
표 3- 2. 유기가공식품 인증현황 .....	22
표 3- 3.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	23
표 3- 4.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현황 .....	25
표 3- 5.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	26

### 제4장

표 4-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 .....	33
표 4- 2. 개정 법안 중 동등성 인정 근거 규정 .....	33
표 4- 3. CAC/GL 32 제7조의 유기식품의 수입에 대한 주요 규정 내용 ...	35

## 제5장

표 5- 1.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42
표 5- 2.	유기제품 생산과 표시에 관한 EU 규칙 834/2007	47
표 5- 3.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48
표 5- 4.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50
표 5- 5.	캐나다의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53
표 5- 6.	캐나다 「유기제품 규칙」의 수입유기제품 인정관련 규정	54
표 5- 7.	일본 유기제품 생산·표시와 인정 관련 제도	55
표 5- 8.	일본 동등성 인정에 관한 규정	58

## 제6장

표 6- 1.	동등성 인정과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대응 및 단기·중장기 예상 효과	77
표 6- 2.	주요 국산 유기농산물 생산현황	81
표 6- 3.	곡물류 수입가능성 조건	82
표 6- 4.	과일류 수입가능성 조건	83
표 6- 5.	과채류 수입가능성 조건	84
표 6- 6.	채소류 수입가능성 조건	85
표 6- 7.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능 품목 현황(종합)	86
표 6- 8.	미국의 유기농산물 수출 품목	88
표 6- 9.	미국의 유기농산물 수출 상위 20개국(수출액 비중)	91
표 6-10.	부산~LA 구간 2011년 1~8월 해상운임	93
표 6-11.	컨테이너 수송 육상 요금	94
표 6-12.	인천~LA 구간 1~8월 항공운임	94
표 6-13.	기타 비용	95
표 6-14.	미국산 유기포도 20톤 수입의 경우(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량 기준)	95



표 6-15. 미국산 유기포도를 수입할 경우 .....	96
표 6-16. 미국 신선유기농산물의 동아시아 주요국 수출현황 .....	98
표 6-17.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선호도 비교 .....	100

#### 부표 1

부표 1-1.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총괄, 2006~'08 평균) .....	111
부표 1-2. 유기가공식품 국가별, 품목별 수입현황(2006~'08 평균) .....	112

#### 부표 2

부표 2-1. 미국 유기농업 품목별 인증면적 추이 .....	113
부표 2-2. 미국의 유기농산물 지역별 수출규모 .....	114

#### 부표 3

부표 3-1.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한 수입 현황 .....	115
----------------------------------	-----

## 그림 차례

---

### 제2장

- 그림 2- 1. 국내 유기식품 시장 규모(2008) ..... 7
- 그림 2- 2. 품목류별 유기농산물 출하량 구성비 ..... 9

### 제3장

- 그림 3- 1.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마크 ..... 19
- 그림 3- 2.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체계 ..... 24

### 제5장

- 그림 5- 1. 미국과 캐나다의 유기로고 ..... 42
- 그림 5- 2. EU의 유기로고 ..... 47
- 그림 5- 3. 일본농림규격(JAS)의 유기마크 ..... 56

### 제6장

- 그림 6- 1. 유기가공식품과 국산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상호 관계  
(두 유기가공식품이 불완전 대체재인 경우) ..... 64
- 그림 6- 2.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미치는 영향 ..... 66
- 그림 6- 3.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과 국산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상호 관계 (두 유기가공식품이 완전 대체재인 경우) ..... 67
- 그림 6- 4. 동등성 도입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 ..... 69
- 그림 6- 5. 인증비용 추가에 따른 개별 특정국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이윤 수준 변화 ..... 73
- 그림 6- 6. 특정국 수입산 유기식품 수입업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정부의 최적 선택 ..... 76

그림 6- 7.	잠재적 품목 수입시의 평균 비용과 이에 따른 수입가능성 ...	78
그림 6- 8.	미국산 유기 농산물과 국산 유기 농산물의 가격 차이와 수입비용 및 유기 인증비용 .....	89
그림 6- 9.	국산 및 수입유기농산물의 안전성 신뢰 비교 .....	99
그림 6-10.	국산 및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 신뢰 비교 .....	100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추진배경과 목적

#### 1.1. 연구배경

-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내생산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에 도입된 유기가공식품표시제와 2008년에 도입된 유기가공식품인증제가 함께 운영되고 있음. 2009년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를 전면실시하려 하였으나, 국내 유기가공식품 대부분이 수입 가공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기가공식품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2년까지 표시제가 연장된 상황임.
- 한편,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인정 근거 규정이 없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요대응 차질 우려 및 외국으로부터 통상문제 제기되고 있음. 유기식품 인증의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정국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

증을 받은 식품을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유기식품의 유기가공식품표시제는 일방 동등성이나 마찬가지로, 정부는 상호 동등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 한해서만 동등성을 부여할 계획임. 동등성이 도입되지 않으면 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수입유기식품의 경우 국내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결국 소비자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다원료 수입유기가공식품의 모든 사용원료를 일일이 다 인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등성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유기식품인증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 4월 농림수산물식품부 소비안정책과에 담당 공무원, 생산자, 전문가, 인증기관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유기인증제도개선 TF’를 설치하고 운영하였고, 소비자단체·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 관계기관 협의회도 수차례 개최함.
- 최근 정부는 국내 유기식품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유기식품시장의 원활한 유통 및 불필요한 통상마찰 방지를 위해, 유기식품의 동등성협정의 선행 작업으로 동등성 인정의 근거 규정 마련 등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반의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친환경농업단체를 중심으로, 개정안 내용 중 「외국과의 동등성 관련 조항」이 국내 유기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유기식품분야의 동등성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유기식품부문 및 유기농업 부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1.2. 연구목적

- 유기식품인증제도 동등성 추진에 따른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제시

## 2. 선행연구 검토

-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제도와 소비자 인식도 등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져왔으나, 유기식품의 동등성 제도와 관련된 최근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매우 제한적임.
- 김우선 외 6인(2004)은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 유기원료 함량의 표시,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유기인증마크의 사용, 수입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 등 유기식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함.
- 조윤미 외 4인(2005)은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식품의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특히 친환경농산물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표시가 필요한 내용, 표시사항의 중요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와 인증제도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음.
- 신용광, 황윤재(2007)는 농가 및 전문가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이원화와 유사품질표시 제도측면에서 만족도가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국제적인 조화와 소비자 신뢰도 개선 등의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박성훈(2009)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성립 경과를 살펴보고, 인증제도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유기식품에 대한 국가적 인식 오류의 시정,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통합, 유기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 등을 제시함.
  - 박민규 외 2인(2010)은 외국 유기식품 인증에 대한 국제적 조화의 이슈에 대응하여 동등성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외국 유기식품 동등성 인증제도의 개선안으로 외국 동등성 인정 세부 절차 마련, 동등성 협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한 유기제품 전담팀 설치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음.
  - 박민규(2011)는 세계 각국의 외국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증제도를 검토하고, 동등성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함. 한국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방안으로 TBT 협의, WTO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추진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 이 연구는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영향 평가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구별됨.

### 3. 연구방법과 범위

#### 3.1. 연구방법

- 국내의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동등성 관련 문헌검토
  - EU,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유기인증제도 검토
  - 주요국의 동등성 추진현황



- 이해관계자 면접 및 의견조사
  - 동등성 관련한 전문가(정책담당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 국내유기식품현황(유기농산물생산, 유기식품수출입 동향 및 유기가공식품의 유통현황 등) 관련 통계조사, 수출입 관련 제도조사 및 분석
- 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
  -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동등성 관련 전문가, 친환경농업단체, 소비자 단체, 유기식품 가공업체 관계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개최
  - 이해관계자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동등성 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적합성에 대한 의견수렴

### 3.2. 연구범위

-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에 있어서는 동등성 인증 여부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대응 예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등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특히 동등성이 도입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있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내 유기농산물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동등성 도입으로 국내 유기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곡물류, 과일류, 과채류, 채소류 등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식물방역법, 농산물협상과 관세제도, 신선도 등의 기준과 수송료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제 2 장

---

### 유기농식품 산업의 현황

#### 1. 유기식품산업의 시장구조

- 우리나라 2008년도 국내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신선식품 1,885억 원, 가공식품 2,158억 원을 합하여 총 4,0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2-1>.
  - 신선식품에서 국산은 1,564억 원으로서 전체 유기식품의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321억 원으로서 전체의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식품에서는 국산원료를 사용한 것이 296억 원(7.3%), 수입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1,547억원(38.3%)으로 전체 1,843억 원(45.6%)으로 조사되었음.
  - 가공식품 가운데에서 외국에서 완전한 가공형태로 수입하는 완제품이 315억원(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국내 유기식품 시장 규모(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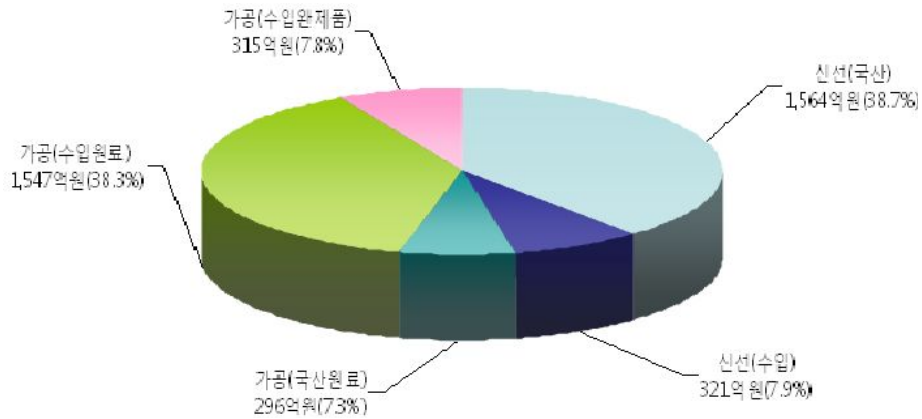


표 2-1. 국내 유기식품 시장규모(2008년)

단위: 억원, %

구분	판매액	구성비	
유기식품 계	4,043	100.0	-
신선식품	1,885	46.6	100.0
국산	1,564	38.7	83.0
수입	321	7.9	17.0
가공식품	2,158	53.4	100.0
국산	1,843	45.6	85.4
(국산원료)	296	7.3	13.7
(수입원료)	1,547	38.3	71.7
수입	315	7.8	14.6

자료: 한국식품연구원(2008).

## 2. 유기식품의 생산현황

### 2.1. 유기농산물 생산현황

-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국내생산 인증실적을 살펴보면 2000~2010년에 농가수는 연평균 50.8%, 면적은 59.1%, 출하량은 38.1% 각각 증가하였음.
  - 2000년대 전반(2000~2005년)에 인증면적 증가율은 97.3%의 급증세를 보였고, 후반(2006~2010년)에는 21.0%의 증가율을 나타냄.
- 2010년 유기농산물의 전체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수 0.9%, 면적 0.9%, 출하량 0.8%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나타냄.

표 2-2. 연도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단위: 호, ha,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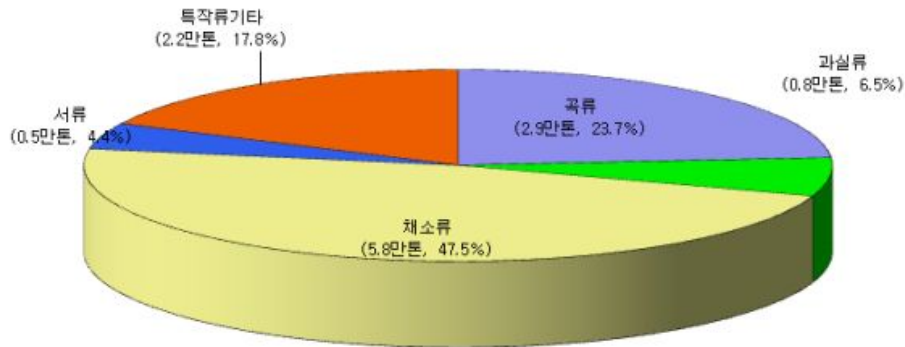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률	전체 비중
농가수(호)	353	7,167	7,507	8,460	9,403	10,790	50.8	0.9
면 적(ha)	296	8,559	9,729	12,033	13,343	15,517	59.1	0.9
출하량(톤)	6,538	95,405	107,179	114,649	108,810	122,243	38.1	0.8

주: 1)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은 유기농산물에 포함시켜 제시함.

2) 전체 비중은 2010년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 경지면적, 생산량 대비 비중임.  
생산량은 식량, 채소, 과일, 유지 생산량 합계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

그림 2-2. 품목류별 유기농산물 출하량 구성비



- 유기농산물 품목류별 출하량을 보면(2010년 기준) 곡류 2.9만톤, 과실류 0.8만톤, 채소류 5.8만톤으로 채소류가 전체의 4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2-2>.

표 2-3. 품목별 유기농산물 생산현황

단위: ha, 건, 톤

순위	구분	면적	건수	출하량	순위	구분	면적	건수	출하량
1	쌀	7,377	1,316	25,491	18	고구마	204	226	2,391
2	사료작물	1,537	90	12,312	19	함초	199	12	1,525
3	녹차잎	823	132	3,040	20	옥수수	180	207	902
4	콩	556	538	663	21	감귤	151	124	2,065
5	밀	542	114	674	22	고사리	139	74	316
6	산양삼	511	53	15	23	매실	135	143	838
7	보리쌀	482	162	1,517	24	호박	135	385	1,760
8	밤	421	45	686	25	양파	133	266	2,757
9	표고버섯	419	86	643	26	포도	120	121	1,159
10	갯	356	3	36	27	당근	117	223	1,348
11	수단그라스	315	12	668	28	뽕은감	114	70	204
12	감자	253	475	2,701	29	토마토	111	322	4,776
13	배추	246	793	8,500	30	호밀	110	18	348
14	고추	245	865	2,971	31	상추	108	445	3,471
15	무	243	717	4,204	32	딸기	96	180	1,627
16	피	218	1	0	33	헛개나무	93	13	207
17	너덕	208	73	227	34	블루베리	82	116	261

표 2-3. 품목별 유기농산물 생산현황(계속)

순위	구분	면적	건수	출하량	순위	구분	면적	건수	출하량
35	브로코리	81	169	750	68	오디	26	58	76
36	마늘	80	210	565	69	부추	25	125	830
37	시금치	78	334	894	70	팔	24	56	27
38	양배추	77	290	1,934	71	과	23	148	257
39	두릅	71	61	62	72	치커리	22	293	696
40	기장	71	61	67	73	들겻잎	22	126	552
41	배	69	69	590	74	로메인	21	214	538
42	대파	68	281	1,770	75	메론	20	64	296
43	인삼류	61	26	76	76	음나무순	20	14	13
44	방울토마토	57	147	1,788	77	뽕	19	41	116
45	오이	54	215	1,423	78	망콩	19	73	37
46	감	50	38	341	79	복숭아	19	21	113
47	참깨	49	177	40	80	호두	19	10	17
48	연	49	33	142	81	곰취나물	19	56	55
49	완두	46	29	44	82	쑥갓	18	224	341
50	오가피	46	39	41	83	기타특용	17	29	7
51	양상추	45	150	676	84	참외	17	35	319
52	도라지	45	65	67	85	조	17	44	35
53	들깨	43	148	47	86	어성초	16	19	205
54	사과	43	54	291	87	민들레	15	46	56
55	신선초	42	120	2,703	88	근대	15	210	332
56	참다래	39	41	599	89	복분자	13	40	67
57	기타채소	39	493	684	90	무화과	13	17	163
58	수박	38	112	802	91	피망	12	95	202
59	케일	38	208	2,324	92	생강	12	63	70
60	야콘	38	99	456	93	겨자채	12	218	279
61	메밀	35	13	3	94	아욱	12	151	164
62	귀리	35	5	0	95	비타민	12	123	201
63	수수	34	80	60	96	가지	12	72	292
64	미나리	33	73	664	97	롤라로사	12	96	117
65	유자	32	22	415	98	녹두	12	26	13
66	오미자	32	41	85	99	삼백초	11	19	96
67	취나물	28	51	17	100	갓	11	74	8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

## 2.2. 유기가공식품 생산현황

-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2004년 38건에서 2005년 99건, 2008년 231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199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2010년에 25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또한 품목수도 2007년 100개에서 2008년 125개, 2009년 250개, 2010년 378개로 해마다 크게 증가한 것을 조사됨.
- 유기가공식품 출하량을 2004년 1,340톤이었으나 2005년에 풀무원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2005년에는 235톤에 그침.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 가서 1,748톤까지 증가하였음 <표 2-4>.

표 2-4.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실적

단위: 건, 개, 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건수	38	99	194	187	231	199	258
품목수	-	-	-	100	125	250	378
출하량	1,340	235	1,103	1,893	1,748	-	-

주: 유기가공식품의 출하량은 2009년부터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인증건수 및 품목수의 증가 따라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10년 유기가공식품의 총 인증실적은 인증 품목수는 378개, 제품수는 1,290개였음.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식품류가 96 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류 71 품목, 음료류 56 품목, 식용유지류 20 품목 등의 순이었음. 제품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기타식품류 395개, 다류 346개, 음료류 141개, 장류 78개, 식용유지류 5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5>.

표 2-5.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인증실적(2010년 기준)

단위: 건

품목(대분류)	품목수	제품수	품목(대분류)	품목수	제품수
과자류	8	47	면류	6	14
빵 또는 떡류	7	17	다류	71	346
잼류	7	39	커피	10	20
설탕	12	24	음료류	56	141
포도당	1	1	특수용도식품	4	6
과당	3	5	장류	19	78
엿류	8	15	조미식품	16	22
당시럽류	4	10	김치류	8	24
올리고당류	2	4	절임식품	5	8
식육 또는 알가공품	1	3	주류	5	6
두부류 또는 묵류	9	13	기타식품류	96	395
식용유지류	20	52	-	-	-
계				378	1,29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0).

### 3. 유기식품의 수입현황

- 유기농산물 수입은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량이 수입되었으며, 2006년 6.8 천톤에서 2009년 10.3천톤, 2010년 13.8천톤으로 증가함.
- 유기가공식품은 대부분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물량이며, 수입량은 2006년 11천톤, 2007년 15천톤, 2008년 18천톤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13천톤으로 나타남.



- 전체 식품수입 중 유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기준 1% 이하이며, 수입량은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감소하였음.

표 2-6. 최근 3년간 수입현황

단위: 건, 톤, 천달러

구분	수입식품			수입유기식품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2007	270,163	11,798,943	8,449,260	3,009 (1.1%)	23,868 (0.2%)	40,358 (0.5%)
2008	254,809	11,731,829	9,860,939	3,844 (1.5%)	25,350 (0.2%)	56,604 (0.6%)
2009	255,341	11,301,537	8,434,081	3,686 (1.4%)	21,293 (0.2%)	39,735 (0.5%)

주: ( )는 전체 수입식품 중 유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 총 43개국에서 3,686건, 21,293톤, 39,735천 달러가 수입됨. 금액기준 미국이 26.6%로 주 수입국이며, 수입건수로는 미국(1,021건)>독일(573건)>영국(217건)>오스트리아(203건)>이탈리아(161건) 순으로 나타남. 중량으로는 브라질(2,822톤)>필리핀(2,805톤)>미국(2,780톤)>호주(2,665톤)>중국(2,447톤)>콜롬비아(1,402톤) 순으로 나타남.

표 2-7. 국가별 유기농 수입현황(금액순)

단위: 건, kg, 천달러

번호	2009년도				2008년도	
	국가	수입건수	금액	중량	국가	금액
1	미국	1,021	10,512,038	2,780,216	미국	14,139,456
2	호주	119	3,133,177	2,665,068	독일	8,121,866
3	필리핀	104	3,105,539	2,805,556	터키	5,794,032
4	브라질	25	3,051,284	2,822,073	호주	4,249,317
5	콜롬비아	58	2,181,487	1,401,626	중국	2,845,488
6	터키	53	1,831,266	835,905	이탈리아	2,600,555
7	이탈리아	161	1,794,800	629,966	브라질	2,502,233
8	중국	139	1,772,903	2,446,787	필리핀	2,232,811
9	독일	573	1,755,982	298,696	뉴질랜드	2,149,482
10	뉴질랜드	115	1,748,010	678,100	스위스	2,028,918
11	멕시코	42	901,678	312,952	캐나다	1,730,629
12	일본	142	842,926	198,338	스페인	1,038,910
13	파라과이	19	745,460	979,500	콜롬비아	941,048
14	스위스	82	708,503	62,938	오스트리아	899,326
15	캐나다	64	680,840	137,142	멕시코	877,484
16	스페인	28	670,455	102,069	일본	720,647
17	아르헨티나	50	634,321	317,796	네덜란드	607,368
18	오스트리아	203	525,349	155,893	프랑스	586,770
19	네덜란드	37	467,446	109,465	파라과이	545,149
20	태국	18	392,274	461,169	키르기스탄	502,000
21	기타	633	2,279,375	1,091,875	기타	1,490,815
	합계	3,053	39,735,113	21,293,130	합계	56,604,304

○ 바나나(신선, 냉장/필리핀), 키위(신선, 냉장/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공품 형태로 수입

- 수입건수로는 침출차(442건)가 가장 많았고, 과·채가공품(297건), 과자(230건), 과채주스(133건), 기타가공품(114건) 순으로 나타남.
- 중량으로는 갈색설탕(3,544톤)이 가장 많았고, 과·채가공품(1,660톤), 바나나/신선(1,655톤), 바나나/냉장(1,510톤), 당류가공품(1,149톤) 순으로 나타남.

표 2-8. 품목별 유기농 수입현황(금액순)

단위: 천, kg, 천달러

번호	2009년도			2008년도		
	품목	수입건수	금액	중량	품목	금액
1	과·채가공품	297	6,074,872	1,660,488	과·채가공품	10,390,397
2	갈색설탕	105	2,578,920	3,543,887	과실·채소류 가공품	9,936,066
3	바나나/신선	68	1,881,817	1,655,095	기타가공품	2,615,618
4	기타가공품	114	1,698,615	234,802	바나나/신선	2,219,278
5	두류가공품 (대두분)	40	1,496,801	824,602	압착올리브유	2,103,148
6	바나나/신선, 냉장	57	1,456,505	1,509,690	갈색설탕	1,676,752
7	압착올리브유	52	1,420,468	162,963	곡류가공품	1,427,008
8	침출차	442	1,292,625	1,087,709	두류가공품 (대두분)	1,424,202
9	당류가공품	44	1,198,004	1,149,054	두류가공품	1,076,636
10	키위(참다래)/ 신선, 냉장	26	1,120,522	464,470	강력밀가루	1,043,509
11	과·채페이스트	21	1,105,520	608,053	과실쥬스	948,679
12	강력밀가루	54	891,595	903,056	당류가공품	921,050
13	인스턴트커피	46	891,044	39,377	키위(참다래)/ 신선, 냉장	905,000
14	과자	230	881,214	153,731	과·채가공품	896,508
15	월굴(블루베리)/ 열매/냉동	30	801,231	126,196	밀/밀(제분용)	817,089
16	두류가공품	15	729,447	141,160	과·채페이스트	784,590
17	커피/건조	36	697,675	152,882	월굴(블루베리)/ 열매/냉동	738,701
18	자두(오얏)/건조	9	686,048	107,962	자두(오얏)/건조	712,672
19	과·채쥬스	133	679,370	324,061	과·채페이스트	692,506
20	볶은커피	112	675,376	73,082	축산물가공품	646,693
21	기타	1,755	11,477,444	6,370,810	기타	14,628,202
	합계	3,686	39,735,113	21,293,130	합계	56,604,304

주: 식품공전 개정('07.10.31)에 따라 '08년 자료에는 유사한 식품유형이 중복

-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 인증 현황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 수입 물량의 44.4%인 4,025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밖에 필리핀 2,185톤(24.1%), 키르키즈스탄 1,010톤(11.1%), 캐나다 690톤(7.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주요 수입 품목은 바나나가 2,411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26.6%를 차지하고, 그밖에 옥수수 2,000톤, 밀 1,999톤, 대두 1,760톤 등으로 나타났음<표 2-9>. 가공식품은 2006~2008년 기준 품목별로는 과·채가공품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음<표 2-11>, <부표 1-1>, <부표 1-2>.

표 2-9.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현황

단위: 톤

수입국	품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 국	고 추	6	13	10	13	-	4
	녹 두	180	140	140	160	100	-
	대 두	5,798	2,458	3,327	1,760	340	20
	후 두	97	-	-	-	-	-
	들 깨	13	84	53	23	-	-
	옥수수	792	955	1,399	2,000	922	-
	참 깨	-	53	138	36	72	36
	해바라기씨	-	36	-	31	-	-
	소 맥	-	180	-	-	-	300
	밀	183	-	400	-	300	-
	옥수수수염	-	-	-	10	-	-
	도토리	-	-	-	-	160	758
	사료작물	-	-	-	40	2,512	3,824
	바나나	-	-	-	-	-	1,000
미 국	머스타드 외	-	4	-	-	-	-
	새싹채소종자	-	11	-	-	-	-
	무 씨	2	-	-	-	-	-
	알팔파씨	1	-	-	-	-	-
	케일 등	7	-	-	-	-	-
	브로컬리	6	-	-	-	-	-
	블루베리	-	-	-	-	35	-
	사료작물	-	-	-	800	180	737
호 주	대 두	-	21	-	-	-	32
	쇠고기	-	-	195	152	101	26
	밀	-	-	-	299	784	-
키르키즈스탄	밀	628	1,235	700	1,010	-	-
	살구	-	-	9	-	-	-
필리핀	바나나	46	729	2,297	2,129	2,670	3,619
	야콘	-	-	59	56	-	-

주: 2009년 기준 인증업체 현황 - 수입자 인증업체(23개소), 해외 생산자 인증업체(65개소), 취급자 인증업체(183개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 식약청(2011).

표 2-9.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현황(계속)

		단위: 톤					
수입국	품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뉴질랜드	키 위	478	924	706	420	464	527
이탈리아	브로컬리	2	-	-	-	-	-
콜롬비아	바나나	262	-	103	17	377	164
아르헨티나	딸기	-	-	12	-	9	-
	블루베리	-	-	-	-	32	-
칠레	블루베리	-	-	-	-	30	-
캐나다	밀	-	-	306	690	198	996
	블루베리	-	-	15	94	28	-
페루	바나나	-	-	-	-	-	22
멕시코	바나나	-	-	-	265	-	-
베트남	사료작물	-	-	-	1,596	958	1,514
러시아	사료작물	-	-	50	-	-	180
합 계		8,501	6,843	9,919	11,601	10,272	13,759

주: 2009년 기준 인증업체 현황-수입자 인증업체(23개소), 해외 생산자 인증업체(65개소), 취급자 인증업체(183개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 식약청(2011).

표 2-10. 인증업체별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09.6~'10.6)

		단위: 톤			
	돌나라 (사업자수)	글로벌 (사업자수)	CUC (사업자수)	합계 (사업자수)	
호주	377.8 (2)	35.9 (2)		413.7 (4)	
미국	202.6 (4)	201.1 (2)		403.8 (6)	
중국	186 (2)	15 (2)		201 (4)	
터키	282.1 (2)			282.1 (2)	
이탈리아	283.6 (3)			283.6 (3)	
뉴질랜드	56.7 (1)			56.7 (1)	
독일	148.6 (1)			148.6 (1)	
브라질	703.6 (1)			703.6 (1)	
파라과이	48 (1)	508 (2)		508 (3)	
콜롬비아		752.1 (6)		752.1 (6)	
아르헨티나		43.2 (2)		43.2 (2)	
태국		20.9 (2)		20.9 (2)	
스페인		9 (1)		9 (1)	
네덜란드			78.5 (3)	78.5 (3)	
합계	2289.282 (17)	1512.1328 (14)	78.5 (3)	3879.9 (34)	

주: 지정받은 4개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중 오씨케이는 인증실적 없음. 상기 사업자수는 수출업자만 포함. 에코서트는(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은 받지 않음) 다 인증기관 심사원을 고용하여 3건의 인증실적이 있으나 아직 수입실적은 없음.

표 2-11.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수입현황('06~'08 평균)

번호	품목명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기타 국가	합계(kg)
1	과·채가공품	1,613,324	733	67	268,341	144,033	1,267,953	3,294,451
2	갈색설탕	56,350		7,200	969,502		562,857	1,595,909
3	과·채페이스트	116,812				966,082	153,671	1,236,565
4	강력밀가루	372,910		803,887			17,771	1,194,568
5	곡류가공품	70,790	998,864	24,800		744	87,530	1,182,728
6	두류가공품	77,395	332,589	588,210		1,210	2,810	1,002,214
7	과실쥬스	443,890		84		5,419	75,523	524,916
8	기타가공품	200,238	64,415			202	212,471	477,326
9	백설탕						352,001	352,001
10	중력밀가루	756		305,033		2,240	4,175	312,204
11	당류가공품	10,728		1,900	40,000		251,550	304,178
12	침출차	621	212,874		13		19,759	233,267
13	압착올리브유	3,336		235		70,799	129,087	203,457
14	정제포도당	11,431					172,382	183,813
15	텍스트린		11,667				166,134	177,801
16	콩기름	149,015	2,580				14,238	165,833
17	물엿	93,122					72,235	165,357
18	당면(건면류)		147,563				-	147,563
19	흑설탕				125,543		17,000	142,543
20	과차류	109,933					17,334	127,267
21	기타식용유지		52,503				39,144	91,647
22	과실음료	84,422				1,019	5,799	91,240
23	소스류	69,796		221		884	14,092	84,993
24	박력밀가루			76,700		1,000	5,275	82,975
25	두류가공품 (대두분)		6,673	53,447			22,667	82,787
26	토마토케첩	43,550		17,830			7,578	68,958
27	과·채쥬스	28,870		5,683	1,200	364	31,712	67,829
28	합수결정 포도당						63,000	63,000
29	엿	61,767					-	61,767
30	청국장						61,059	61,059
합계		3,619,056	1,830,461	1,885,297	1,404,599	1,193,996	3,846,807	13,780,216
기타		451,805	115,534	47,939	33,652	105,910	607,681	1,362,521
총계		4,070,861	1,945,995	1,933,236	1,438,251	1,299,906	4,454,488	15,142,737

주: 품목 및 국가 정렬기준 - 수입량 상위 30 품목, 수입량의 상위 5개 국가



## 제 3 장

#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현황과 동등성 제도

### 1.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개요

- 유기식품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유기농산물을 원료·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의미함(식품산업진흥법 2007. 12제정, 2008. 6 시행).

그림 3-1.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기농산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li></ul></li></ul>	 <p>The image shows the certification mark for Organic Agriculture. It features a stylized green leaf above two overlapping circles, one blue and one green. The text '친환경농산물 인증' (Organic Agriculture Certification) is written in a curve above the circles, and '유기농산물' (Organic Agriculture) is written in a green box at the bottom.</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기가공식품<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li><li>· 친환경농산물 중에서도 유기적 생산조건을 완벽하게 준수한 유기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제조 가공 및 취급하여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식품</li></ul></li></ul>	 <p>The image shows the certification mark for Organic Food Processing. It features a stylized green leaf above two overlapping circles, one blue and one green. The text '유기가공식품 인증' (Organic Food Processing Certification) is written in a curve above the circles, and '유기가공식품' (Organic Food Processing) is written in a green box at the bottom.</p>

- 현재 유기농식품과 관련된 제도의 경우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2.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는 1997.12.1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유기농산물/축산물”이 적용대상임.
-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이고 시행규칙은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임.
- 인증절차를 보면,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함.
  -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결과통보→사후관리
-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정받아 친환경농산물인증 업무를 수행함.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구비요건은 기본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과 부가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 별표1)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2011년 9월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75개의 민간인증기관에서 맡고 있음. 이는 2005년에 비해 62개가 늘어난 것임.
  -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비중이 2005년에 64%



대 36%였으나, 2010년에는 44%대 56%로 민간인증기관이 크게 증가함.

표 3-1.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2005			2010		
	품관원	민간	합계	품관원	민간	합계
건수(건)	988 (84.7)	178 (15.3)	1,166 (100.0)	1,642 (55.4)	1,320 (44.6)	2,962 (100.0)
농가수(호)	3,217 (59.5)	2,186 (40.5)	5,403 (100.0)	4,667 (43.3)	6,123 (56.7)	10,790 (100.0)
면적(ha)	3,930 (64.5)	2,165 (35.5)	6,095 (100.0)	6,865 (44.2)	8,653 (55.8)	15,518 (100.0)

주: 2005년 민간인증기관 13개, 2010년 63개로 증가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

### 3.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유기가공식품이란 인증 받은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를 유기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써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식품을 지칭함.
  - 유기적인 방법이란 화학적으로 합성된 첨가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사선조사를 하지 않으며, 유기식품이 비유기식품 또는 오염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유기농산물의 순수성이 가공과정에서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말함(농림수산식품부, 2008).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필요성과 목적
  - 유기가공식품은 최종 제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유기가공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그 관리 체계가 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으로 보증하는 절차인 유

기인증이 필요함.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3-2. 유기가공식품 인증현황

지역	총 인증건수 (A+B)	인증			정기심사			품목
		건수 (A)	품목	제품수	건수 (B)	품목	제품수	
전체	272	105	130	304	167	240	992	
외국	42	26	28	51	16	21	73	
남아공	3	2	2	2	1	1	2	다류
네덜란드	1	1	1	1	0	0	0	음료류
뉴질랜드	1	0	0	0	1	1	2	음료류
독일	1	1	1	4	0	0	0	기타식품류
멕시코	3	2	2	6	1	2	4	과당
미국	3	2	2	14	1	1	1	음료류, 기타식품류
브라질	4	1	3	3	3	4	9	설탕, 커피, 식용유 지류, 기타식품류
스페인	2	1	1	1	1	1	1	식용유지류
호주	2	2	2	4	0	0	0	기타식품류
이탈리아	3	0	0	0	3	4	5	음료류, 기타식품류
중국	2	1	1	1	1	2	2	면류, 기타식품류
콜롬비아	4	4	4	4	0	0	0	커피, 설탕
태국	2	1	1	1	1	2	2	과당, 당시럽류, 기타식품류
터키	3	1	1	1	2	2	42	기타식품류
파라과이	2	1	1	1	1	1	3	설탕
페루	3	3	3	3	0	0	0	커피, 코코아가공품 류 또는 초콜릿류
프랑스	1	1	1	2	0	0	0	기타식품류
필리핀	2	2	2	3	0	0	0	설탕
우리나라	230	79	102	253	151	219	919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변천 과정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1998년 11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근거한 특산물 품질인증제의 일환으로 유기농산물 가공품 인증제가 운영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2000년 7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으로 운영됨(식약청 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법률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소비자 보호 및 유기식품 산업 육성차원에 문제가 노정됨.
  - 200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부정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및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식품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8년 6월 식품산업진흥법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청의 표시제를 인증제에 통합하는 것으로 협의됨. 식약청의 표시제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함.
  
-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폐지 2012년 말까지 유예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2008년 시행되면서 2010년 말까지 병행되어 운용되다 폐지될 예정이었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새로운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 말까지 운영되기로 유예됨.

표 3-3.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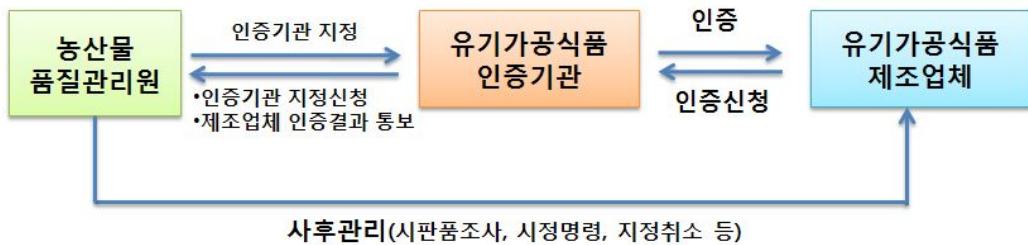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호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
·(표시기준) 외국의 유기식품은 해당 수출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있는 경우 “유기” 표시 가능
·(문제점) 수입유기식품에 대해 실질적 동등성협약 체결절차 없이 국가 차원의 동등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 31개국 345개 인증기관의 인증 제품 한국수출 가능(최근 3년 평균 약 15천톤)

---

○ 유기농식품의 인증제도 개관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현장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식품 인증제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식품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기농식품 인증기관은 유기농식품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인증 받은 사업자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함.

그림 3-2. 유기농식품의 인증체계



○ 2011년 1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유기농식품 인증기관의 수는 총 10개소로 나타났음<표 3-4>.

- 한국 인증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오씨케이,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한국농식품인증원 등 6개소이고, 외국 인증기관은 Contron Union Certification, ECOCCERT SA,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BCS(BCS Oko-Garantie GmbH) 등 4개소임<부표 3-1>.

표 3-4.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현황

· 한국식품연구원	·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 ECOCERT SA
·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 오씨케이	· BCS(BCS Oko-Garantie GmbH)
· 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 한국농식품인증원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식품정보시스템(goodfood.go.kr).

- 2011. 10. 5일 기준 인증 받은 유기가공업체는 총 272개소
  - 국내 230개소, 외국 42개소임(이탈리아 3, 미국 3, 브라질 4 등).
-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은 ①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및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및 제분 업자 포함), ②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③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임.
-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시 사용되는 원재료는 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 95% 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유기농립산물 또는 유기축산물로 인증 받은 농·축·임산물이어야 함.
-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7조 1항과 관련하여 [별표 2]로 지정되어 있음. 유기농산물 함량이 100%, 95% 이상, 70% 이상 ~ 95% 미만, 70% 미만일 경우로 구분하여 표시사항이 달리고 있음<표 3-5>. 단,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표시제에서와 같이 GMO 원료 사용과 검출을 금지함.

표 3-5.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유기농산물 함량	내용	표시사항
100%	유기농산물 외 어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 100%”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 가능</li> <li>• 표시장소: 제품의 어느 장소든지 가능</li> </ul>
95% 이상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 가능</li> <li>• 표시장소: 제품의 어느 장소든지 가능</li> </ul>
70% 이상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 이상 95% 미만인 유기농산물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라는 용어 앞에 70% 이상에 해당되는 원재료명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가능</li> <li>• 표시장소: 주표시면을 제외한 곳 사용 가능</li> </ul>
70% 미만	물, 소금을 제외한 원재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 용어 표시 가능</li> <li>• 표시장소: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만 가능</li> </ul>

#### 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동등성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실질적 심사 없이 관련 국가 간의 동등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식약청은 전세계 31개 국가의 345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되면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 외국 인증기관 지정 현황(식약청): EU 113(스페인 27, 독일 23 이탈리아 13, 프랑스 6 등), 미국 55, 일본 59, 중국 30, 터키·아르헨티나 13, 인도 12, 캐나다 11, 호주 7 등임.
-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유기 가공원료의 수급을 위해서도 동등성 협정의 근거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입유기식품 가운데 유기 설탕, 밀가루, 올리브유, 과채가공품 등 국내에서 원료조달이 어려운 품목이 많아 수입원료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경우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은 취약하여 유기가공식품의 원료조달에 있어서 국산은 16%, 수입이 8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인증제도가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유기가공업체가 원료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2회에 걸쳐 지정신청을 해야하며, 유기농산물 인증기관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함.
  - 제도가 분산되어 있으면 인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인증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며, 유기식품의 제품 차별화가 잘 되지 않음(박성훈, 2009).
- 현재 우리는 인증 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동등성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동등성제도를 통해 유기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기 인증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함.
  -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 인증기관의 선정과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지금보다 수입 유기식품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국제규범에서 인정하는 동등성 규정이 없어 심각한 통상마찰 야기할 우려가 있음.
  - WTO/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협정에서 인정하는 동등성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식품에만 유기로고와 유기, organic 등 일반적 표현을 허용하고 있음.
  - 유기가공식품 수출국은 특히 다원료 가공식품의 경우 모든 원료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실정임.

## 제 4 장

---

# 유기식품의 동등성 개념과 주요 이슈

### 1. 동등성의 의미

#### ○ 동등성의 개념 정립

- 동등성(equivalence)은 양국의 인증체계 및 기준이 상호간에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 ‘동등성 인정’이란 이러한 적합성을 국가간에 서로 인정한다는 의미함.
- ‘유기식품 인증의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특정국가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에 다른 나라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 동등성 인정은 크게 상호동등성과 일방동등성으로 양분할 수 있음. 상호동등성은 양국이 쌍방의 제도를 상호 인정하여 자국 제도에 따라 인증한 제품이 상대국 인증제도에 따른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케 하는 제도임.

- 상호동등성은 국제무역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식임. 그러나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국가간 협상 뿐 아니라 정



부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 현재, 캐나다와 EU, 미국과 캐나다 협약이 상호동등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음.

- 상호동등성과 달리 일방동등성은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3국의 제도를 평가하여 자국 제도와 동등함을 인정하는 방식임. 기본적으로는 동등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가 상대 국가에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단, 일방동등성은 협정내용에 따라 인증로고의 표시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음.
- 일방동등성의 한 종류로 ‘인정협정(Recognition Agreements)’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 인정협정은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의 유기인증 규정에 맞게 자국 내에서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으로 이렇게 지정된 인증기관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수출국 유기인증 규격에 따라 유기제품을 인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농무성(USDA)는 2011년 현재 덴마크 농림수산물부, 인도 농식품수출개발청(APEDA), 이스라엘 PPIS 식물검역원(AACABAP), 일본 농림수산물 표시규격과, 뉴질랜드 농림부(NZFSA), 영국 농촌식품환경부(DEFRA)와 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일방동등성의 또 다른 종류로 ‘수출협정(Export Arrangements)’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 수출협정은 수출국 정부가 인증제품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부대조건이 포함됨.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방동등성 인정 협정은 수출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수출협정이 있음.
- 인증기관 동등성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 이외의 제3

국에 소재하는 인증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동등성을 인정하는 제도로 EU가 이 경우에 해당함.

- 인증기관 지정권자 지정방식은 일방동등성 협정을 다소 변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의 정부기관을 자국 제도의 인증기관 지정권자로 지정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 자국제도에 따라 인증제품을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임.

## 2. 유기식품의 동등성 도입 배경

-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Organic Products) 또는 유기식품(Organic Foods)에 대해서는 환경,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기표시를 하고 있음.
  -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은 CODEX 지침을 참고하여 제정한 자국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유기식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7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을 식약청 고시로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소비자보호·산업육성 차원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200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부정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및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식품인증제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08년 6월에 식약청의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제(이하 표시제)’를 대신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도입됨. 표시제는 2012.12.31일까지만 유지할 계획임.

- 2013년부터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상 표시제를 적용하여 수출국 인증기관의 인증이 있으면 “유기”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인증제 시행으로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 국내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이에 미국 EU, 캐나다 등 우리나라에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동등성제도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음.
-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갖춘 대부분의 국가는 WTO/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협정에서 인정하는 동등성(Equivalency) 근거가 있으나 한국은 현행법상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인정 근거 및 규정이 없어 심각한 통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유기식품인증제를 가진 국가 중(전 세계 약 30여 개국) 동등성 규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호주가 유일함(호주는 국내용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유기식품 인증제도도 상근 심사원 기준 등이 국제기준(CODEX, ISO 65 등)과 합치 하지 않아 통상마찰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다원료 가공식품 또는 다국적 원료 혼용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국은 모든 원료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이와 같이 수출국들이 우리나라 유기식품(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등성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 수입식품 인증을 위해서는 충분한 해외 인증기관 확보 및 심사원 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현실임.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국내 6개소, 외국 4개소로 총

10개소임.

- 다원료 수입유기가공식품의 경우 모든 사용원료를 일일이 인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미국, 뉴질랜드, EU 등은 케첩, 초콜릿 제품 등 다원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개별 성분들을 각각 우리나라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받아야 할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우려됨.
-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은 대부분 수입 가공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표시제를 폐지할 경우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원료 조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음.
- 2008년 6월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표시제가 존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도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농림수산물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내 유기식품 시장을 육성·발전시키고, 생산자·소비자의 균형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표 하에 동등성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11년 3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국회 제출된 상태임.

표 4-1.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

- 
- ①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 친환경농업육성법(농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수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 식품)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일원화
    - 이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의 제명 변경
  - ② 인증사업자 관리
    - 인증사업자 관리 강화, 인증사업자 권리 및 편의 증진
  - ③ 인증기관 관리
    - 인증기관 관리 강화, 인증기관 관리 및 편의 증진
  - ④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등
    -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인증관리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⑤ 동등성 인정 근거 규정 마련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동등성(상호동등성) 인정 추진 근거 마련
  - ⑥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
    -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공시 등) 제도 신설
- 

표 4-2. 개정 법안 중 동등성 인정 근거 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동일한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주: 친환경육성법 전부 개정안(2011).

### 3. 동등성 관련 WTO/TBT, CODEX 등 국제기준

#### 3.1. 동등성 관련 WTO/TBT 협정

- WTO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 제2조 제4항은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표준을 본국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조 제7항은 ‘회원국은 비록 비회원국의 기술규정이 본국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본국의 기술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 규정을 자기 나라의 기술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accepting as equivalent technical regulations)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유기제품에 관한 국제표준은 1999년에 채택된 CODEX CAC/GL 32<sup>1</sup>와 ISO 65가 있음.

#### 3.2. 동등성 관련 CODEX 지침

- 코덱스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는 UN 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해 설립된 공동식품 표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70개 이상의 회원국이 모이는 정부간협의체임.

---

1 GL 32-1999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www.codexalimentarius.net/download/standards/360/CXG\\_032e.pdf](http://www.codexalimentarius.net/download/standards/360/CXG_032e.pdf)> 참조

- 1999년 코덱스위원회는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Marketing and Labell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CAC/GL 32)」를 채택하였음.
- CAC/GL 32 제7조는 유기식품의 수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3. CAC/GL 32 제7조의 유기식품의 수입에 대한 주요 규정 내용

- 
- 수입 유기제품은 수출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 또는 지정 기구가 증명서 상의 지정물량(lot designated)이 지침서 본문과 부속서(Annex)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 준비, 판매, 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발급되었고 다음의 동등성 결정을 만족시킨다는 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상품에는 첫 번째 양수인의 장소까지 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하며, 수입자는 검사 및 감사 목적으로 거래 증명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상품의 진위성은 수입 때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유기제품의 수입이 국가의 검역을 목적으로 지침서에 적합하지 않은 규칙에서 요구하는 처리 때문에 지침서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제품은 유기제품의 지위를 상실한다.
  - 수입국은 수입국과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상호 협의한 독립된 전문가가 마련한 보고서를 포함한 수출국의 규칙에 의하여 동등성 판단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국은 수출국과 함께 수출국에서 생산과 준비 자체에 적용되는 것을 포함한 생산, 준비, 검사, 증명 조치 규칙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수입국은 소비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상품이 수입국에서 지침서 제3조 규정에 따른 표시 요건에 따라 표시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자료: 박민규 외 3인(2009)

- Codex 지침서 제7조에 따라 동등성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을 위해 수입국은 수출국에 상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수입국의 수출국 현장방문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거나 이 밖에 수입국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Codex 지침서는 동등성 인증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현장방문,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동등성 인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수출입 당사국간의 협정에 의해서 규정되게 됨.
- ‘Codex 부속서 C. 수입’은 수입국이 수입업자와 수입된 유기제품에 대한 적절한 검사요건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4. 동등성 도입 관련 주요 이슈

- 동등성 제도 도입은 사실상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의 대안으로 처음에 추진되었으나 동등제가 유기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에 대해서까지도 관계가 되므로 기존의 제도 하에서 표시제와는 관계가 없었던 유기농산물에 대한 동등성 관련 이슈가 생겨나게 됨.
- 유기농산물의 경우는 처음부터 인증제도 하에서 수입이 되었는데 외국에서 생산되고 인증을 받은 외국 유기 농산물 또한 예외 없이 한국 법에 의하여 다시 유기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유기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자 또는 수출업자는 농산물 생산국에 의한 인증과 한국 법에 의한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함.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유기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에서는 유기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에 대한 동등성도 요구하게 됨.
- 동등성 제도 도입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지지입장)과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보는 입장(반대입장)으로 의견이 나누어짐. 여기에서는 주요 이슈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 4.1.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는 동등성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산 유기식품 인증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해주게 되어 결국 인증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한 외국산 유기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함. 결국 외국의 유기식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내 유기농업의 쇠퇴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따라서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동등성 개념을 제외한 인증제만을 전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동등성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입 금지품목(과일·과채류), 신선 엽채류(신선도 문제) 등의 수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보다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봄. 또, 상호 동등성 인정 추진으로 유기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가능함.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일부 수입가능 품목도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 비선호, 높은 관세(고추 270%, 마늘 370%, 양파 135%)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입 어려움.
  - 유기농산물은 운송과정에서 병해충 발생 가능성 높고, 이 경우 소독처리를 거쳐 검역을 통과하게 되면 비유기농산물로 전환됨.

#### 4.2. 유기가공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전부 개정안에 동등성 규정 도입시 외국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해주게 되어 결국 인증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한 외국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지지하는 입장은 동등성을 인정하더라도 지금보다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봄. 왜냐하면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는 실질적 심사 없이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동등성 인정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임. 식약청은 전세계 31개 국가의 345개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되면 유기 가공식품의 수입을 허용(2000년 표시제 도입)함;

- 식약청의 외국 인증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EU 113(스페인 27, 독일 23 이탈리아 13, 프랑스 6 등), 미국 55, 일본 59, 중국 30, 터키·아르헨티나 13, 인도 12, 캐나다 11, 호주 7 등; 유기가공식품 수입물량 15천톤('06~'08 평균): 미국 4.1, EU 2.9(이탈리아 1.3, 독일 0.6 등), 중국·호주 각 1.9, 브라질 1.4, 터키 0.8, 파라과이 0.6 등의 순임.
- 동등성 제도 초기에는 일부국가와 동등성 협약을 체결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현행 표시제하의 인증기관 수(31개국 345개 기관) 이하로 지정될 것임. 따라서 수입량은 현재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표시제에 비해서 외국산 유기식품의 시장접근기회가 보다 제한될 여지가 있어 국내 생산자는 보다 안정적 시장 확보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음.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다양한 원료가 혼합되기 때문에 국내 원료만으로 가공산업을 활성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동등성 제도를 통해 수입 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기가공식품산업의 위축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 유기농업 육성 측면과 전체 유기식품시장 성장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입유기식품은 설탕, 밀가루, 올리브유, 과채가공품 등 국내에서 원료조달이 어려운 품목이 많아 수입원료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경우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곤란함.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협약을 추진하게 되면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협약 상대국으로 수출할 경우 국내 인증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인증비용 절감 및 수출촉진에 기여할 것임. 최근 한류 및 한국 드라마 신드롬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유기식품을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동등성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4.3.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관련

-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등성 제도가 GMO 원료 제품 등 외국 유기식품의 무차별적인 수입을 허용하여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또, 동등성 인정으로 다량의 외국 유기식품이 수입되어 국산 유기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
-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유기인증 기준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체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임. 따라서 동등성 제도는 현행 표시제보다 국민의 건강권보호에 유리함. 미국, EU, 일본 등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의 해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이 수입되고 있음. 미국은 6개국 30개 인증기관, EU는 9개국 58개 인증기관, 일본은 32개국과 동등성 협정을 체결함.
  - 수출업체가 부담할 인증비용이 결국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이익(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유기가공식품인증의 경우 인증비용은 7,400천원/건 수준('09년, 미국기준)
  - 다원료 유기식품은 현행 제도하에서 인증 받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아토피환자, 암환자 등 유기식품 수요자들에게는 공급 공백 사태가 우려되나 동등성 인정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함.
  - 유기가공식품 및 그 원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국내산과 차별화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음.

### 4.4. 기타 동등성 관련 이슈

- 동등성 협약 유형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일방적 동등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친환경농업법 개정법안이 동등성 인정 시 상호주의가 원칙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함.

## 제 5 장

### 주요국의 유기식품 동등성 사례

#### 1. 유기제품 동등성협정의 주요 사례

##### 1.1. 미국-캐나다 상호동등성 협정

-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2009년 6월17일 양국의 유기시스템 즉 미국의 국가 유기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과 캐나다 유기제도(Canada Organic Regime)가 상호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유기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양국에서 협의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경우,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상대국의 유기로고를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동등성은 양국의 규제 시스템을 상호 평가하고 비교한 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결정되었음.
  - 기본적인 평가요소로는 규제, 인정기준, 인증기준, 표준, 모니터링 및 집행활동 등이 있음.
-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유기식품의 동등성 협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짐.

- 1) 유기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기관은 교역 당사자 목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갱신함.
  - 2) 교역 당사자는 자국의 유기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상호 통지해야 함.
  - 3) 교역 당사자는 유기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립된 상호간의 관리시스템의 효과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수립하게 됨.
  - 4) 수출입 협정은 유기 수입품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절차를 포함해야만 함.
- 양국간 유기제품의 수입·수출 규정을 보면 일부 제한사항이 있음. 가장 특징적인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 질산염을 사용한 농산물은 캐나다 내에서 유기제품으로 진열·판매할 수 없음.
    - 수정재배 또는 양액(분무경) 재배로 생산된 농산물은 캐나다에서 유기제품으로 진열·판매할 수 없음.
    - 동물성 생산품은 2008년 10월 개정판에 따르면 반드시 CAN/CGSB-32.310-2006에 규정된 가축의 사육 밀식률에 의거하여 생산되어야 함.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 항생제를 투여한 동물을 원료로 한 생산품은 미국에서 유기제품으로 진열·판매할 수 없음.

그림 5-1. 미국과 캐나다의 유기로고

<미국 농무부의 유기표지(Organic Seal)>      <캐나다 유기 로고(Organic Logo)>



○ 유기로고 사용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의 유기 표지(Organic Seal)는 국가 유기 프로그램(NOP) 웹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캐나다 유기 로고(Organic Logo)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이나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이 인정한 인증기구를 통해 입수 가능함.

- 유기원료함량이 95 % 이상인 제품은 유기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양국 로고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개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음.
- 양국의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기준은 <표 5-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단, 유기 성분재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 “100%” 유기는 캐나다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사용함.

표 5-1.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유기원료 함유량	유기표시	로고사용	비고
100%	“100%” 유기	가능	· 물과 소금을 제외한 모든 원재료가 유기인 경우
95%이상	“유기(Organic)”	가능	-
70~95%미만	“유기로 제조”	불가	-
70%미만	유기성분 표시	불가	· 보조 표시면에 해당성분에 대한 유기표시 가능 · 별도의 인증 불필요

주: “100%” 유기는 미국에서만 사용

## 1.2. 미국-일본 수출협정

- 2002년 3월 27일 일본이 미국의 국가유기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이 일본농림규격(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었음.
- 미국과 일본간의 동등성협정은 일본이 미국의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인 미국 국가유기프로그램(NOP)가 일본 자국의 인증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일방적으로 미국에 적합 또는 인정(recognition)을 통보한 방식으로 수출협정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수출협정은 양국의 유기기준이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적용함.
  - 미국과 일본의 수출협정에 따라 미국 국가유기프로그램(NOP)의 유기표준 인증을 받은 미국 사업자가 생산한 식물성 농산물을 일본에서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됨. 단, USDA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인증기관(ACA)들이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ion)를 발행해야 함. 따라서 인증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인증기관이 USDA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함.
  - 1) ‘미국 유기 원료와 가공농산물 수출 조건’이라는 품질 매뉴얼에 이행요건을 포함시켜야 함.
  - 2) 서신이나 이메일로 고객이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출협정의 따른 이행요건을 통지해야 함.
  - 3) 수출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절차를 준비하고 준수하여야 함.
  - 4) 모든 수출증명서에 고유 번호를 할당해야 함.
  - 5)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수출증명서 발행, 무효, 폐기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수출증명서 발급과 증명서에 서명을 하여 증명서의 진정성을 보증할 하도록 인가받은 직원을 지정해야 함.

- OFPA나 CFR 205에는 수출협정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권한에 관한 OFPA 제6514조와 CFR 205.500-510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sup>2</sup>
- 동등성 인정의 수출협정은 그 범위나 효과가 제한적임. 일본이 미국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한 것은 식물에 한정해서 임. 또한 일본에서 금지하고 있는 3개 물질 중 일부 물질을 사용한 농식품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하였음.
  - 일본 농림수산성의 일본농림규격(JAS)와 미국 NOP의 대표적인 차이로 알칼리로 추출한 부식산, 리그닌 술폰산, 탄산수소칼륨 등 3가지 물질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음. 이들 3가지 물질은 미국유기표준에서는 사용이 허용되나 일본농림규격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양국 정부의 논의 결과 3가지 물질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탄산수소칼륨: 사용 허용
    - 리그닌 술폰산: 결착제 또는 고결방지제로만 허용
    - 알칼리 추출 부식산: 일본수출품에 대한 사용금지 유지

### 1.3. 캐나다-EU 상호동등성협정

- 2011년 6월 캐나다-EU 유기 동등성 협정으로 캐나다와 EU는 상대국에서 인증받은 유기제품을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수출입할 수 있게 되었음. 양국간의 유기제품 동등성협정은 상호동등성협정에 해당됨.
  -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받는 유기제품은 캐나다 유기로고와 EU 유기

---

<sup>2</sup> USDA AMS, *Issuance of Export Certificates under an Export Arrangement with Japan*  
 <<http://www.ams.usda.gov/AMSV1.0/getfile?dDocName=STELPRDC5076399&acct=nop-geninfo>>(2009.9.2. 검색)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더 많은 유기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농산물법(Agricultural products Act)과 식품검사청법(Food Inspection Agency Act)에 의거하여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89/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 ("European Organic System")을 검토한 결과, 이들 EU 규정에 따라 생산된 유기제품의 동등성을 수용하였음.

○ EU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590/2011에 따라 Organic Regime에 의해 인증받은 다음의 제품들에 대해 동등성을 수용하였음.

- 가공되지 않은 신선 농산물, 식물유전자원, 종자
- 식품으로 가공된 농산물
- 사료

○ 캐나다산 유기제품이 EU로 수출될 경우

- 캐나다-EU 동등성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5/2008의 19조에 따라 EU로 수출할 수 있음.
- 동등성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캐나다에서 재배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된 다원료제품을 의미하며, 애완동물사료류, 수경재배류, 화장품류, 직물류, 가구류 등이 해당됨.
- EU로 수출되는 모든 유기제품은 EU 라벨링 조건을 충족시켜야 라벨링을 할 수 있음.

○ EU산 유기제품이 캐나다로 수출될 경우

- 유럽유기시스템(European Organic System)에 따라 생산되고 인증받은 유기제품들은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캐나다에서 유기제품으로 인정받

을 수 있음. 캐나다 유기로고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인증을 담당하는 통제기관으로부터 로고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 EU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제33조에 따라 EU에 수입된 성분들을 대상으로 함.
- 대상 유기제품은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제35조 b항에 명시된 EU 통제기구에 의해 유기인증 획득해야 함.

## 2. 주요국의 유기인증제도와 동등성 인정

### 2.1. EU의 유기인증제도와 동등성 인정

#### 2.1.1. 개요

- EU 국가들의 유기 인증제도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 대부분의 유기인증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
- EU의 유기인증제도 관련 법 추진현황을 보면, 1991년 유기생산에 대한 법률과 의회규정(EEC No. 2092/91) 공포
- 2009년 유기제품 생산과 표시에 관한 규칙 의회규정 834/2007호 시행
  - 834/2007 제3국 수입 조항에 대한 시행령 Commission Regulation 1235/2008
  - 유기식품 수입 가이드라인

표 5-2. 유기제품 생산과 표시에 관한 EU 규칙 834/2007

## 제32조(Import of compliant products)

- EU법에 따라 생산·취급되고, EU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고 서류를 구비한 제품에 대하여 적용
- 인증기관은 EN 45011 혹은 ISO65 규격에 따라 지정받아야 함
- 인증기관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심사시 평가보고서를 제출

## 제33조(Import of products providing equivalent guarantees)

- 생산품(the product)이 EU법과 동등한 생산 규칙에 따라 생산되고, EU법과 동등한 인증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받고, 증명서를 첨부한 제품에 적용
- 위원회(Commission)은 EU와 동등한 생산 규칙에 따라 생산하고, EU와 동등한 인증 규칙에 따라 인증한다고 인정하는 제3국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 매년 3월 31일까지 인정된 제3국은 연차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제32조와 제33조 제3국 목록에서 수입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동등성 적합성은 CAC/GL 32에 따른다.

## 2.1.2. 인증제도

- EU 유기로고 표시와 관련하여 EU는 2000년 EEC 331/2000(EU로고에 관한 규격 규정)을 제정하여 유기원료를 최소 95%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유기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이 경우 EU 유기 로고사용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 EEC 331/2000(EU로고에 관한 규격 규정)은 이후 EC 889/2008, EU 271/2010로 개정되었음.

그림 5-2. EU의 유기로고



- 2010년 7월 1일부터 EU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은 의무적으로 EU 단일로고

를 사용해야 함. 단일로고 옆에는 인증기관 번호와 재배지역을 명시(EU agriculture, non-EU, EU/non-EU)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별국가의 로고와 민간업체 로고는 병행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증기관 번호는 EU 단일 로고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함. 단, 기존에 사용되던 포장지는 20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함. 역외 국가는 사용여부를 임의로 적용할 수 있음.

표 5-3.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유기원료 함유량	유기 표시
최소 95%이상	광고, 표시에 유기 생산방법 명시 가능
70%~95%미만	성분 목록에만 유기 생산방법 언급 가능
70%미만	광고, 표시에 일체의 유기 생산방법 언급 불가

주: “유기로 전환중인 생산물” 문구는 추수 전 최소 12개월 간 유기 생산방법을 적용한 경우 사용 가능

- 인증기관은 유럽표준(EN 45011)과 ISO 가이드 65에 따라 선정되며, 현재 EU 전역에 197개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덴마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민간인증기관에 의한 품질인증체제를 도입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8개소, 벨기에 3개소, 불가리아 10개소, 키프로스 2개소, 체코 3개소, 덴마크 4개소, 에스토니아 2개소, 핀란드 18개소, 프랑스 5개소, 독일 24개소, 그리스 8개소, 헝가리 2개소, 아일랜드 5개소, 이탈리아 16개소, 라트비아 2개소, 리투아니아 1개소, 룩셈부르크 4개소, 몰타 2개소, 네덜란드 1개소, 폴란드 11개소, 포르투갈 6개소, 루마니아 17개소, 슬로바키아 1개소, 슬로베니아 1개소, 스페인 27개소, 스웨덴 3개소, 영국 9개소 등이 있음.

### 2.1.3.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 EU위원회 No 1235/2008의 제 3국 목록에서 등재되어 있는 국가에서 생산,

가공된 유기제품은 EU가 정한 유기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으로 인정함.

- 제3국 목록에 등재된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호주,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 튀니지, 일본 등 9개국이 있음.
  - 이들 국가의 인증기관을 보면 아르헨티나 4개소, 호주 6개소, 코스타리카 4개소, 인도 16개소, 이스라엘 4개소, 일본 13개소, 스위스 4개소, 튀니지 4개소, 뉴질랜드 3개소로 총 9개국에 58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 2.1.4. 동등성 인정

-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유기 제품이 EU에서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음.
  - 제3국 인증기관의 인정에 의한 방법이 있음. 이 방법은 동등성 인정 국가 이외의 제3국에 소재하는 인증기관의 신청을 받아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유럽 표준(EN 45011)과 ISO 가이드 65에 의거해 제3국의 인증기관을 인증하고 목록을 마련해야 함.
  - 제3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방법이 있음. CODEX 지침서 CAC/GL 32에 의거해 동등성을 평가하고 목록을 마련함.
  - 제3국 인증기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있음. CODEX 지침서 CAC/GL 32에 의거해 동등성을 평가함. 이 경우 인정절차는 제3국에 대한 인정절차와 동일함.

## 2.2. 미국의 유기인증제도와 동등성인정

### 2.2.1. 개요

- 1990년 유기식품생산법 제정

○ 2000년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이 국가유기프로그램(NOP) 수립

○ 2002년 10월부터 국가차원의 인증제도 본격 시행

## 2.2.2. 인증제도

○ 미국 농무부는 유기원료의 함유율에 따라 유기표시 및 유기로고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표 5-4>.

- 물과 소금을 제외한 모든 원재료가 유기인 경우 “100%”유기로 표시 가능하며, 유기로고 역시 사용가능함.
- 원료의 95%이상 유기인 경우 “유기(Organic)” 표시 및 로고를 부착하여 판매가 가능함.
- 원료의 70%이상 95% 미만인 유기인 경우 “유기로 제조”했다는 표시는 가능하나 유기로고는 사용 불가능함.
- 유기 원재료가 70% 미만인 경우 “유기 성분 표시”만 가능함. 전면에는 유기표시 및 유기마크 사용이 불가하며, 보조면에는 해당성분에 대한 유기표시가 가능함. 이 경우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음.

표 5-4.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유기원료 함유량	유기표시	로고사용	비고
100%	“100%” 유기	가능	· 물과 소금을 제외한 모든 원재료가 유기인 경우
95%이상	“유기(Organic)”	가능	-
70~95%미만	“유기로 제조”	불가	-
70%미만	유기성분 표시	불가	· 보조 표시면에 해당성분에 대한 유기표시 가능 · 별도의 인증 불필요

### 2.2.3. 동등성 인정

- 수입 농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방규칙(CFR) PART 205 국가 유기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에 규정되어 있음. 국가 유기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유기농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음의 3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먼저, 미국 농무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이 있음.
  - 현재 약 100여개의 인증기관이 미국농무부 국가 유기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0여개는 외국의 인증기관임. USDA NOP로부터 인증 받는 인증기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여건 이상의 유기제품작업을 관리하고 있음.
- 둘째, 인증협정(Recognition Agreement)을 통하여 유기농식품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음.
  - 미국 인증기관을 통하여 직접 인증을 받는 대신에 외국 정부의 요청 및 협정에 따라 미국 농무부가 외국의 인증기관이나 정부기관을 평가한 후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을 유기농 제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수입 유기농식품을 인증할 수 있음.<sup>3</sup>
  - 현재 약 43개의 외국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음. 미국 농무부는 캐나다,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인도 등과 인증협정 방식을 통하여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음.
  - 미국내 수입유기농제품이 적합성평가를 통과하면, 미국 농무부 유기표지 (USDA organic seal)를 부착하고 유통·판매할 수 있음.

---

3 (c) In lieu of accreditation under paragraph (a) of this section, USDA will accept a foreign certifying agent's accreditation to certify organic production or handling operations if:

- 셋째, 동등성 협정(Equivalence Agreement)을 통하여 유기농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미국 유기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PA)과 시행령에 따라 미국 농무부 장관이 미국의 NOP와 등등한 기준을 외국이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 수입농식품은 미국 내에서 유기농식품 인증마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여기서의 동등성은 외국정부의 ‘기술적 요건(Technical Requirements)’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이 미국 유기식품생산법(OFPA) 및 시행령의 요건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함.
  - 미국은 2009년 6월 캐나다와 동등성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유기농식품 생산자는 양쪽 국가 모두에서 유기농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 2.3. 캐나다의 유기 인증제도와 동등성 인정

### 2.3.1. 개요

- 캐나다의 유기 인증제도의 경우 2000년 개정 JAS법에 의거한 유기식품의 기준, 인증제도 발족
- 2001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규격 제정하며 유기인증제도 본격 시행
- 2005년 유기축산물과 유기사료에 대한 일본농림규격(Codex 지침서에 근거) 제정



### 2.3.2. 인증제도

- 캐나다 유기농 제품관련 근거 법은 캐나다 농산품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1985, c. 20; 4th Supp.))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유기농산물 관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등급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실질적인 사항은 「유기 제품 규칙,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에 규정되어 있음.
- 캐나다 유기제품 규정 제24조는 유기제품의 표시와 광고요건(Labeling and advertising requirements)을 규정하고 있음.

표 5-5. 캐나다의 유기원료 함유량별 유기표시

유기원료 함유량	유기표시	로고사용	비고
95%이상	“유기(Organic)”	가능	-
70~95%미만	“유기로 제조”	불가	-
70%미만	유기성분 표시	불가	· 보조 표시면에 해당성분에 대한 유기표시 가능 · 별도의 인증 불필요

- 캐나다의 인증기준은 CAN/CGSB-32.310-2006<sup>4</sup>의 일반 원칙과 관리 기준에 따르고 있음. 일반원칙과 관리기준은 “유전공학으로 생산한 물질 및 제품은 유기원칙과 양립할 수 없음”, “동일성분의 유기제품과 비유기제품은 함께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4 <[http://www.techstreet.com/cgi-bin/detail?product\\_id=1596185](http://www.techstreet.com/cgi-bin/detail?product_id=1596185)>

### 2.3.3. 동등성 인정

- 수입제품과 동등성 인정에 관한 사항은 「유기 제품 규칙,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 제27조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음.

표 5-6. 캐나다 「유기제품 규칙」의 수입유기제품 인정관련 규정

---

#### IMPORTATION

27. (1) No person shall import or market a product as an organic product in Canada unless the product
- (a) is an organic product under these Regulations; or
  - (b) originates from a country with which the Agency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or an arrangement regarding the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organic products and the product is certified as organic,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r the arrangement, by a certification body recognized by that country.
- (2) Despite subsection (1), a product originating from a country that has not entered into an agreement or an arrangement regarding the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organic products may be imported or marketed in Canada as an organic product if it is certified as organic by a certification body recognized by a country referred to in paragraph (1)(b) and the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28. Any person who imports a product or markets it in Canada as an organic product shall be able to demonstrate, at all times, that the product meets one of the requirements set out in section 27 and shall retain the documents attesting that the product is organic.
- 

## 2.4. 일본의 유기 인증제도와 동등성 인정

### 2.4.1. 개요

- 1992년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 표시 준칙」을 제정

- 2000년 개정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S)에 의거한 유기식품의 기준, 인증제도 수립
- 2001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규격 제정하며 유기인증제도 본격 시행
- 2005년 유기축산물과 유기사료에 대한 일본농림규격(Codex 지침서에 근거) 제정

## 2.4.2. 인증제도

- 일본 유기인증제도는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유기 JAS규격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에서 유기인증을 관리하고 있음. 하지만 감농약이나 감화학비료를 사용한 특별재배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가이드 라인’에 의거하여 현(縣)단위의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표 5-7. 일본 유기제품 생산·표시와 인정 관련 제도

근거법	생산·표시관련 규정	인정관련 규정
JAS 법	유기농산물 JAS	· 유기농산물과 유기사료에 관한 생산행정관리자와 외국생산행정관리자의 인정의 기술적 기준 <sup>5</sup>
	유기 축산물 JAS	· 유기가공식품과 유기사료에 관한 생산행정관리자와 외국생산행정관리자의 인정의 기술적 기준 <sup>6</sup>
	유기 사료 JAS	· 유기축산산물에 있어서 생산행정관리자와 외국생산행정관리자의 인정의 기술적 기준 <sup>7</sup>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JAS	·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와 유기축산물에 있어 소분업자와 외국소분업자의 인정의 기술적 기준 <sup>8</sup>
	특별재배농산물 표시준칙	·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가공식품에 있어 수입업자의 인정의 기술적 기준 <sup>9</sup>

자료: 박민규 외 3인(2009)

- ‘유기가공식품의 일본농림규격’ 제5조에 유기가공식품명 및 원재료명의 표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
-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식품에 영어로 “organic”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농림규격 제5조에 규정하는 “오가닉”표시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기 JAS 마크를 붙여야 함.

- 외국에서 생산된 유기식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 “유기 JAS 규격에 따라”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외국의 사업자는 일본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지정 받은 등

그림 5-3. 일본농림규격(JAS)의 유기마크



록인정기관 또는 등록외국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유기 JAS마크를

- 
- 5 有機農産物及び有機飼料（調整又は選別の工程のみを経た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生産行程管理者及び外国生産行程管理者の認定の技術的基準 制定平成17年11月25日農林水産省告示第1830号, 一部改正平成18年2月22日農林水産省告示第186号
  - 6 有機加工食品及び有機飼料（調整又は選別の工程のみを経た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生産行程管理者及び外国生産行程管理者の認定の技術的基準 制定平成17年11月25日農林水産省告示第1831号 一部改正平成18年2月22日農林水産省告示第186号
  - 7 有機畜産物についての生産行程管理者及び外国生産行程管理者の認定の技術的基準 制定平成17年11月25日農林水産省告示第1832号 一部改正平成18年2月22日農林水産省告示第186号
  - 8 有機農産物、有機加工食品、有機飼料及び有機畜産物についての小分け業者及び外国小分け業者の認定の技術的基準 制定平成17年11月25日農林水産省告示第1833号 一部改正平成18年2月22日農林水産省告示第186号
  - 9 有機農産物及び有機農産物加工食品についての輸入業者の認定の技術的基準 制定平成17年11月25日農林水産省告示第1834号 一部改正平成18年2月22日農林水産省告示第186号

첨부해야 함.

- 국내 유기식품 수입업자는 일본의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JAS 마크를 첨부해야 함.
  - 현재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 JAS마크를 붙여 수입하며, 그 외 유기축산물 등의 농림물자에 “유기” 또는 “오가닉”용어 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음.
- 현재 등록된 인증기관 현황을 보면, 80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지자체를 포함하여 국내 인증기관은 65개소, 해외 인증기관은 15개소임.
- 지자체는 법인격을 보유하므로 JAS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등록인정기관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현재 6개 현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인증 사업자 수를 보면, 농가 3,821, 제조업자 1,020, 소분업자 750임.
- 이 중 전체 제조업 인증 중 해외 제조업자 인증이 40%를 차지하는데, 해외 생산 유기가공식품의 수입비중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4.3. 동등성 인증

- JAS법을 개정하면서 JAS법 제15조 2 제2항에 상호동등성 규정을 삽입함.
- 이에 따라 일본의 격부 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경우 등록기관의 인정을 받아 수출업자가 표시를 할 수 있음.
- 시행규칙에서 EU 15개 국가, 미국,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해 32개 국가를 인정하고 있음. 이 중 미국산 유기가공식품 인정은 미국 유기식품생산법 (OFPA)에 의한 수출인증으로 일본에서의 인증과 동등하게 취급됨.

표 5-8. 일본 동등성 인정에 관한 규정

법	시행규칙
<p>제15조의 2 (수입업자에 의한 격부(인증)의 표시) ① 제19조의 15 제1항에 규정한 지정농림물자의 수입업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소 및 지정농림물자의 종류별로 사전에 등록인정기관의 인정을 받거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지정농림물자에는 그 수입하는 지정농림물자 또는 그 포장, 용기 혹은 송장에 해당 인정에 관한 격부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증명서는 외국(해당지정농림물자에 대하여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격부의 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격부의 제도가 있는 나라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의 정부기관 그 외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기관이 발행 한 것으로 한한다.</p>	<p>제37조(지정농림물자에 대하여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격부제도와 동등한 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격부제도가 있는 국가)          법 제15조의 2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나라는, 제40조 제4호에 규정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가공식품에 대하여 아일랜드, 아메리카합중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및 룩셈부르크로 한다.</p>
<p>③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지정에 관계하는 외국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자의 명칭 그 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제14조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p>	

자료: 박민규 외 3인(2009).

- 일본의 외국 유기식품 수입 인증은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국내 및 국외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받는 경우, 외국 인증제도를 인정하여 유기농식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음.
- 첫째, 일본 국내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 동등성을 인정함.
  - 일본 국내 인증기관이 국외 생산농가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유기 JAS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기 JAS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음.
- 둘째, 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동등성을 인정함.
  -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국외 인증기관이 국외 생산농가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유기 JAS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기 JAS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음.
- 셋째, 외국 인증제도 인정에 의하여 인증이 인정되는 방법이 있음.
  - 이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인정한 외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당국가의 인증합격증명서를 일본 국내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은 수입업자가 유기 JAS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유기 농산물과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유통시킬 수 있음. 단, 일본 농림규격에 의한 인증 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가 있는 국가의 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여기서 ‘동등한 수준’이란 첫째 ‘인증 제도와 그의 적절한 운용의 담보조치’와 인증표시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JAS 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 둘째 대상이 되는 농림물자에 관한 규격이 일본 농림규격과 동등해야 함.

## 2.5. 호주의 유기인증제도와 동등성 인정

### 2.5.1. 개요

- 호주에서 유기농업은 인공비료나 합성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학적으로 고품질인 최적의 생산물과 식품을 제공하는 농업으로 정의되어 있음.
- 호주 유기산업 정책은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 식품농업국(Food and Agriculture Division)이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의 운영은 호주 검역검사원(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에서 맡고 있음.
  - AQIS는 유기적 및 생태학적 생산에 관한 국가규격을 포함한 유기산업의 수출 정책사항을 책임지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1982)과 그 하위법령인 유기농산물 인증 명령(Export Control Orders; Organic Produce Certification)에 의거하여 유기농산물의 수출을 관리하고 있음.
  - 반면, 유기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식품통제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유기농인증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있지는 않음.

### 2.5.2. 인증제도

- 인증 및 검사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은 AQIS가 승인한 인증기관(AQIS approved certifying Organizations)에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받은 인증기관은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함.
  - AQIS 시장 유지단(Market Maintenance Group)은 호주의 유기 및 생태학적 생산물에 대한 신규 해외시장과의 수입 요구사항을 협상할 책임



- AQIS는 호주정부와 호주의 유기 및 생태역학 산업계간의 공식 연락 체계를 담당하는 유기산업수출자문위원회(Organic Industry Export Consultative Committee, OIECC)에 대한 사무국 역할을 함.
  - 수출관리(유기생산물 인증) 규정(Export Control Orders; Organic Produce Certification)을 두고 있으며, 규정에 의해 정부 간 인증서(Government to government certificate)가 없는 유기생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호주 AQIS에 승인받은 기관은 NASAA, ACO, OGA, OFC, safefood, TOP, BDRI 등의 7개 인증기관이 있으며, 이들 인증기관은 사업장의 국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를 시행함.

### 2.5.3. 호주 유기산업 관련 규격 및 법령

-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은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채택한 식품법(Food Code)으로, 식품규격, 실행규범, 지침, 권고사항으로 구성됨.
  - 국제식품규격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거래의 정당성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어 시행관리당국의 식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음.
- ISO/IEC 가이드 65(EN 45011)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다양한 적합성 평가활동에 대한 적용하기 위하여 제시한 지침으로, 제품인증을 심사하는 제3의 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 지침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3자 인증기관의 운영 절차의 확실성과 일관성을 보장함(ISO/IEC 1996)

## 2.6. 뉴질랜드의 유기 인증제도

### 2.6.1. 개요

- 내수용 유기식품은 별도의 국가차원의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수출용 유기식품에 대해서는 공식 유기보증 프로그램(Official Organic Assurance Programme, OOAP)을 운영하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 “유기제품”은 인증기관이나 당국에 의해 인증 받을 수 있음.

### 2.6.2. 인증제도

- 유기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청(New Zealand Food Safety Authority, NZFSA)의 정책 방침은 안전성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한 동일한 위험관리체계가 유기식품과 그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한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됨.
- 식품안전청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유기식품과 관련정보를 제공함.
- 공식 유기보증 프로그램(OOAP)은 뉴질랜드산 유기농식품이 수출하기 전에 미리 수출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함으로써 해외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출 유기농식품이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에서 규정하는 유기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즉, 수출하는 유기식품이 수입국의 유기규격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임.
  - 현재 수출하는 유기농식품이 OOAP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 아직까지 5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간의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업체 스스로 수출 국가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충족시켜야 함.

## 제 6 장

### 동등성 추진에 따른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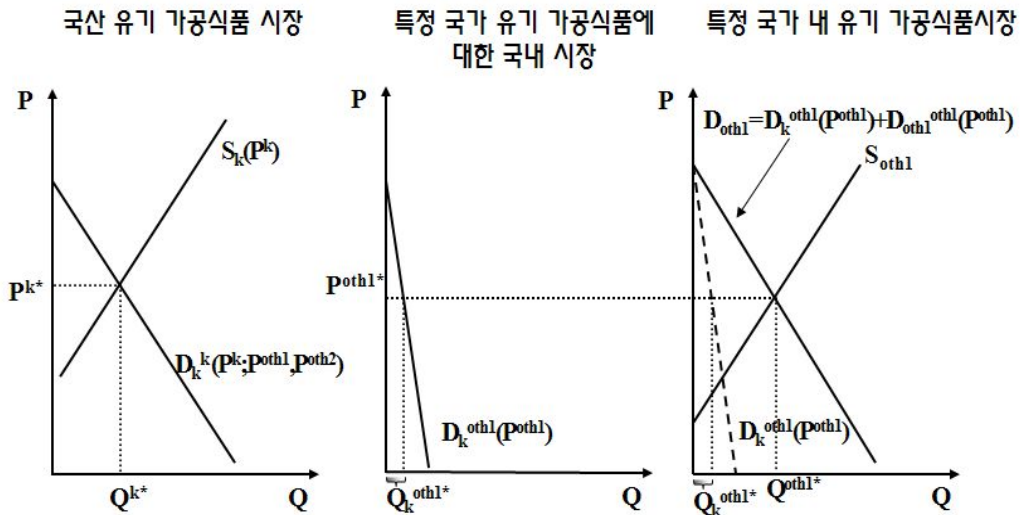
#### 1. 국내 유기농식품 부문에 미치는 영향

##### 1.1. 유기농식품 수입 및 국내시장 여건

-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유기농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직접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국내에 수입될 수 있음.
  -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기농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우리나라의 인증기관 지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인증한 유기식품에 대해 유기식품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여 우리나라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기농식품 표시제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한국은 직접 지정한 4개국 4개 인증기관(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독일)을 통한 수입이 이뤄지고 있고, 그 이외의 31개국 345개 기관은 표시제를 통해 수입되고 있음. '06~'08년 평균 우리나라 수입 유기농식품 통계에서 미국은 56개의 기관을 통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전체 유기농식품 약 15,143톤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약 4,071톤을 수입한 수입비중이 가장 큰 국가임<표 2-11>.

- 동등성 허용이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에 미칠 영향은 결국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내 시장여건과 수입여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표시제의 형태로 수입되는 각국의 수입 품목별 시장여건과 수입여건, 국내 시장 여건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자료, 시간 등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음.
- 따라서 동등성 도입에 따른 수입 대상국과의 경제적 여건을 특정 국가, 특정 품목의 형태로 이론적으로 일반화하여 분석하고, '06~'08년 동안 해외 유기농식품 수입량 1위인 미국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여 동등성 도입으로 인한 외국 유기농식품 수입이 국내 유기농식품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도록 함.

그림 6-1. 유기농식품과 국산 유기농식품 시장의 상호 관계  
(두 유기농식품이 불완전 대체재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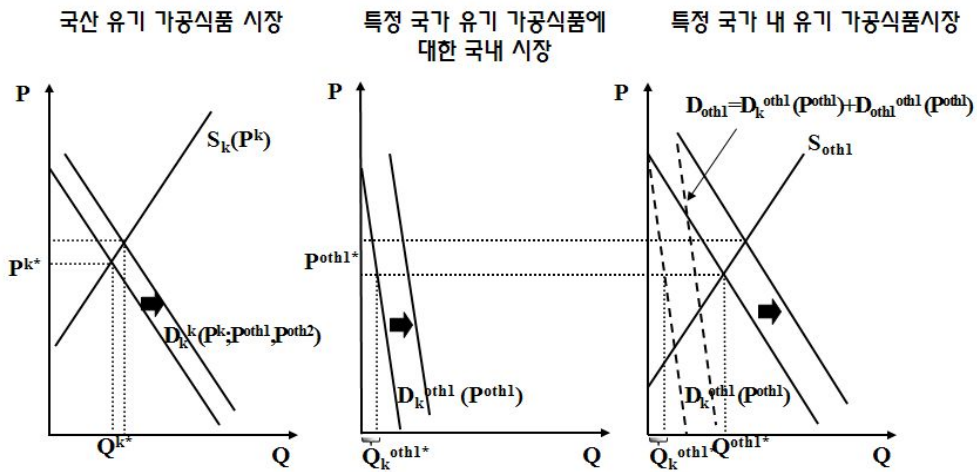


- 국산 유기농식품과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이 동질적이지 않아 국내 시장에서 서로 불완전 대체 관계로 경쟁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그림 6-1>과 같은 상황으로 묘사될 수 있음.
- 국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균형물량  $Q^{k*}$ 와 균형가격  $P^{k*}$ 는 국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급곡선  $S_k(P^k)$ 와 국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곡선  $D_k^k(P^k; P^{oth1}, P^{oth2})$ 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됨. 여기서  $P^k$ 는 국산 유기농식품 가격이며,  $P^{oth1}$ 은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 가격,  $P^{oth2}$ 는 기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유기농식품 가격임.
-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수요곡선은  $D_k^{oth1}(P^{oth1})$ 로 나타낼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내 수요량(수입량)  $Q_k^{oth1*}$ 는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가격  $P^{oth1*}$ 과 국내 수요곡선  $D_k^{oth1}(P^{oth1})$ 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됨 (논의의 편의를 위해 수입비용, 관세 등은 고려하지 않고 그래프를 표시하였음).
-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균형가격  $P^{oth1*}$ 는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총 수요곡선  $D_{oth1}$ 이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공급곡선  $S_{oth1}$ 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됨. 여기서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총 수요는 특정 국가 내 수요  $D_{oth1}^{oth1}(P^{oth1})$ 와 한국에서의 수요  $D_k^{oth1}(P^{oth1})$ 이 합산된 것임(논의의 편의를 위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유기농식품은 없다고 간주하여 그래프로 표시하였음).
- 만일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 이는 <그림 6-2>의 가운데 그래프에서  $D_k^{oth1}(P^{oth1})$ 을 우상향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다시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에 대한 특정 국가 내 총 수요곡선  $D_{oth1}$  역시 우상향 이동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  $D_{oth1}$ 이 우상향 이동하면, 이는 다시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농식품의 가

격  $P^{oth1}$ 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귀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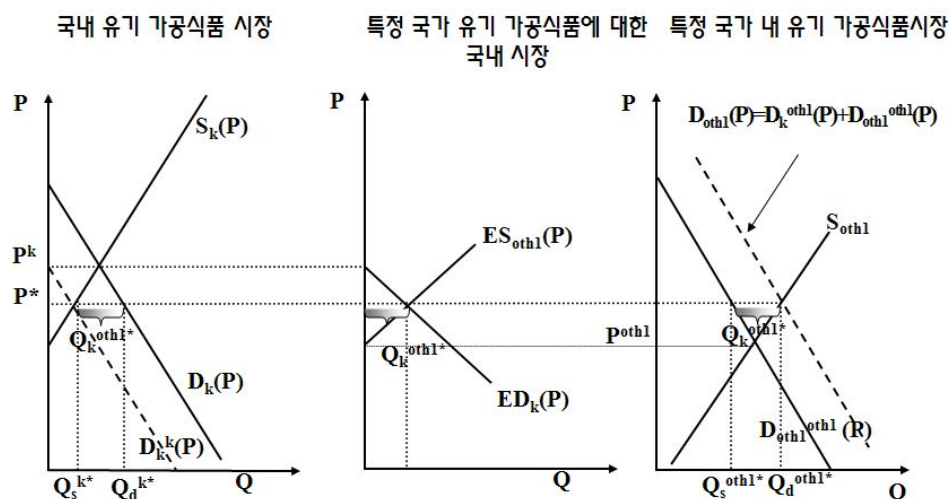
- 이러한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은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은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경쟁재의 가격상승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은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확대 즉,  $D_k^k$ 를 우상향 이동시키고 그 결과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시장 균형 물량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균형 가격의 상승도 초래함.
-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는 결국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확대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유기가공식품 시장 전체적인 성장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음.

그림 6-2.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미치는 영향



- 한편,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동질적이어서 완전 대체관계로 경쟁하고 있을 경우 이는 <그림 6-3>과 같은 상황으로 묘사할 수 있음(논의의 편의를 위해 수입비용, 관세 등은 고려하지 않고 그래프를 표시하였음).

그림 6-3.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과 국산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상호 관계  
(두 유기가공식품이 완전 대체재인 경우)



- 먼저 국내 시장에서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요곡선은  $D_k(P)$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공급곡선은  $S_k(P)$ 로 나타낼 수 있음.
- 만일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P_k$  수준으로 결정될 것임.
  - 그러나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이  $P^*$ 의 가격으로 수입되면 국내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량은 수요곡선  $D_k(P)$ 와  $P^*$ 가 만나는  $Q_d^{k*}$ 로 결정되며, 국내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공급량은 공급곡선  $S_k(P)$ 와  $P^*$ 가 만나는  $Q_s^{k*}$ 로 결정되며, 양자의 차이인  $Q_d^{k*} - Q_s^{k*}$ 는 해당 특정 국에서 수입될 것임.
  -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국 시장 내에서는 특정 국가 내 수요곡선  $D_{othl}^{othl}(P)$ 와 공급곡선  $S_{othl}(P)$ 가 만나는 수준에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가격이  $P_{othl}$ 로 결정될 것임. 그러나 한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D_{othl}(P) = D_k^{othl}(P) + D_{us}^{othl}(P)$  수

준으로 상향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수요곡선이 공급곡선  $S_{\text{oth1}}(P)$ 과 만나는 수준에서  $P^*$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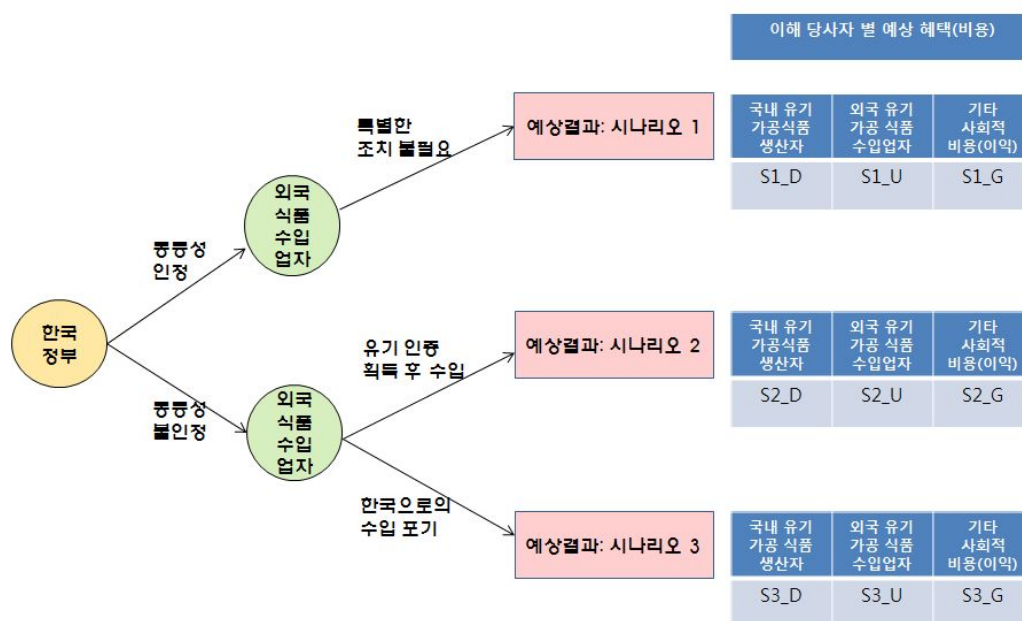
-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시장은 <그림 6-3>에서 가운데 그래프로 묘사할 수 있음. 즉, 국산 유기가공식품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초과수요곡선 ( $ED_k(P)$ )과 특정 국가 내 소비를 충당하고 남는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초과공급곡선( $ES_{\text{oth1}}(P)$ )이 만나는 점에서 최적 수입량  $Q_k^{\text{oth1}*}$ 가 결정됨.
- 만일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는 수입량도 증가시키지만 국내에서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또한 상승시키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균형 공급량 또한 증가시키는 결과로 귀결됨.

## 1.2. 동등성 인정 여부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대응 예상 시나리오

-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통해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등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현행과 같은 표시제로 수입되고 있는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은 수입이 중단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로 계속 수입을 하려면 국내에서 요구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해야만 함.
- 정부가 동등성을 인정할 경우 혹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예상되는 대응과 이에 따른 결과는 <그림 6-4>와 같은 게임나무(Game tree)의 틀로 도식화 할 수 있음.



그림 6-4. 동등성 도입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 구성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는 우리나라에 유기가공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의 유기식품 생산자가 아니라 해당 유기가공식품을 현지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수입업자임.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요구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는 주체는 수입업자이기 때문임.
- 따라서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식품 수입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것인지 아니면 인증 획득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로의 수입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함.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등성 인정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산 유기식품 수입에 초점을 맞춘 <그림 6-4>에서 묘사한 게임 나무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는 우리나라 정부와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임.

### 1.2.1. 동등성을 인정할 경우

- 우리나라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외국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는 특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그 까닭은 현행과 같이 표시제로 수입되는 것과 동등성 인정 하에서 수입되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임.
  - 또한 동등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외국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증가를 가져오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음.

$$S1_U = \Pi_{U1} = P^k Q - P^{oth1} Q - C_m(Q) - F_x \quad (6-1)$$

- 여기서  $P^k$ 는 국내 판매가격,  $P^{oth1}$ 은 특정 국가 내 구입가격,  $C_m(Q)$ 는 유통 및 취급비용,  $F_x$ 는 기타 고정비용을 나타냄.
- <식 6-1>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수입량  $Q^*$ 는 이윤극대화의 1계 조건인 <식 6-2>를 통해 결정됨.

$$P^k = MC_m(Q) + P^{us} = MC(Q) \quad (6-2)$$

- 여기서  $MC_m(Q)$ 는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드는 유통 및 취급에 대한 한계비용이며,  $MC_m(Q)$ 과 구입가격  $P^{oth1}$ 을 합한  $MC(Q)$ 는 수입업자의 총 한계비용을 나타냄.
- 이러한 이윤극대화 조건은 사실상 현행과 같이 유기식품 표시제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윤극대화 조건과 동일함. 왜냐하면 유기식품 표시제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 수입업자의 이윤극대화문제는 <식 6-1>로 정의되기 때문임. 따라서 동등성 인정은 개별 특정 국가의 수입산 유기 식품에 대한 수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 1.2.2.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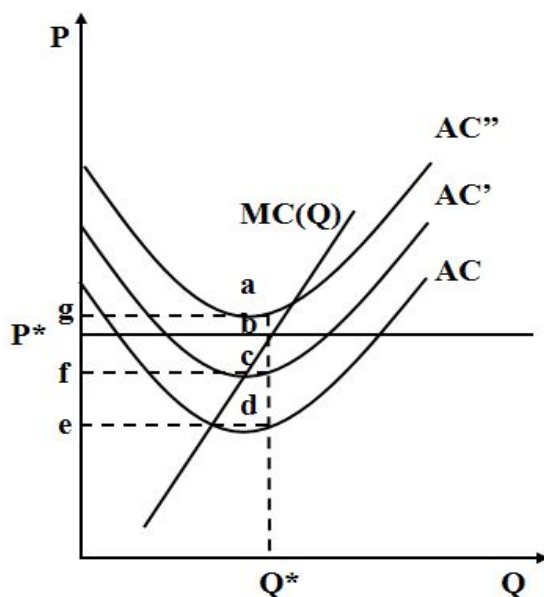
- 우리나라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표시제가 종료되는 2013년 이후 특정국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임.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요구대로 유기 인증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의 수입을 포기하는 것임.
- 여기서 수입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두 가지의 대안 중 어떤 것이 수입업자에게 보다 큰 혜택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 즉, <그림 6-4>에서 S2\_U가 S3\_U보다 클 경우, 수입업자는 유기 인증을 획득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유기인증 획득 및 한국으로의 수입을 포기할 것임.
- 이 때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유기 인증을 받는 비용이 매우 커서 인증획득 절차를 거친 이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는 총 수입보다 크다면, 인증 획득 및 한국으로의 수입을 포기하게 될 것임. 반면, 인증비용이 비록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증비용과 여타 수입비용을 합산한 것이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는 총 수입보다 작다면, 수입업자는 인증을 획득하고 우리나라로 계속 수입하려 할 것임.
-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특정국 수입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은 수입업자의 이윤극대화 문제로 설정할 수 있음.

$$S2\_U = \Pi_{U2} = P^k Q - P^{us} Q - C(Q) - F_x - F_c \quad (6-3)$$

- 여기서  $P_k$ 는 국내 판매가격,  $P_{oth1}$ 은 특정국내 구입가격,  $C(Q)$ 는 유통 및 취급비용,  $F_x$ 는 기타 고정비용,  $F_c$ 는 유기인증비용을 나타냄.

- 유기 인증비용은 취급하는 물량 단위에 따라 증가하는 가변비용이 아니라, 한번 인증을 획득하면 인증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고정비용 성격을 지님. 따라서 <식 6-3>으로 표현된 이윤극대화 문제에서 도출되는 1계 조건은 유기인증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 도출되는 이윤극대화 문제의 1계 조건인 <식 6-2>와 동일함.
  - 따라서 <식 6-3>으로부터 도출되는 최적 수입량  $Q^*$ 와 <식 6-1>로부터 도출되는 최적 수입량  $Q^*$ 와 동일함.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증을 획득하고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되는 특정국의 수입산 유기 가공 식품의 수입량은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나, 현행과 같은 표시제를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추가적인 인증비용과 이에 따른 수입량 변동 혹은 수입업자의 이윤수준의 변화는 <그림 6-5>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음. 즉, 특정국의 수입산 유기 가공 식품이 국내 시장에서  $P^*$ 로 판매된다고 할 경우, 수입업자의 최적 수입량은 판매가격  $P^*$ 와 한계비용  $MC(Q)$ 가 만나는  $Q^*$ 로 결정됨. 여기서 동등성을 인정하거나 현행과 같이 표시제로 수입되는 경우(즉, 인증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평균비용 곡선은  $AC$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수입업자가 얻는 이윤은  $\square P^*bde$ 로 계산할 수 있음.
  - 만일 우리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유기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인증비용이 발생하여 평균비용이  $AC''$  수준으로 증가한다면, 수입업자는  $\square gabP^*$ 만큼의 손실을 보게 됨. 따라서 수입업자는 한국으로 수입할 유인이 없음.

그림 6-5. 인증비용 추가에 따른 개별 특정국 수입산 유기농식품 수입업자의 이윤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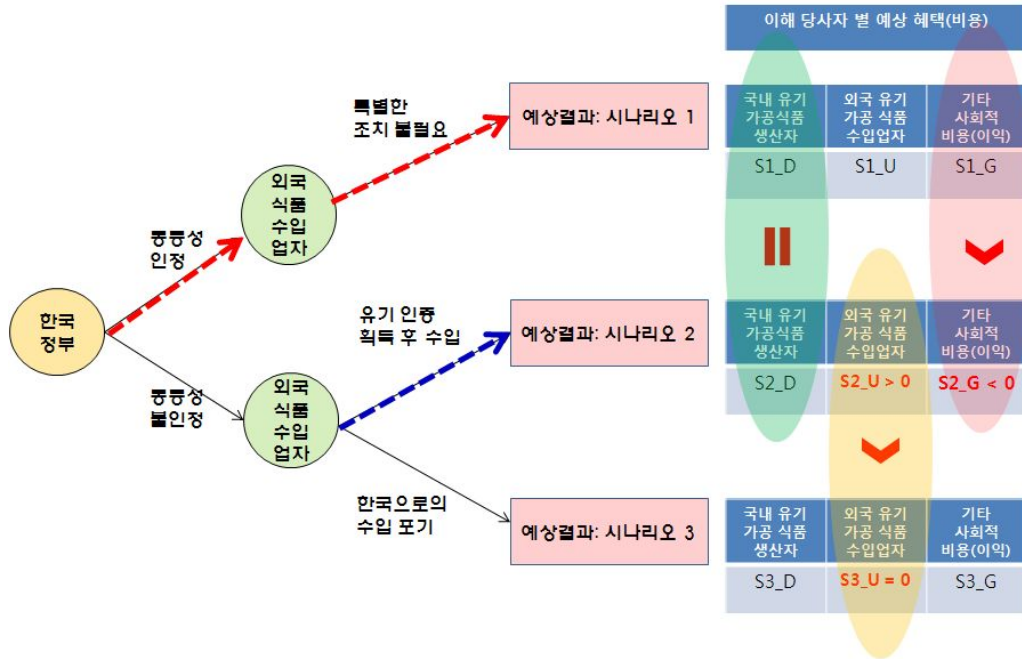
- 반면, 인증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평균비용의 상승이 매우 큰 수준이 아니라 그림에서와 같은 AC' 정도의 수준이라면, 수입업자는 인증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획득할 수 있는 이윤  $\square P^* bde$  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양의 이윤인  $\square P^* bcf$  만큼의 이윤을 획득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는 수입을 중단할 이유가 없음.
-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인증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양의 이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입업자는 수입을 중단하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즉, <그림 6-4>에서  $S2_U > S3_U = 0$  (수입을 중단할 경우 이윤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입업자에게 귀속되는 혜택  $S3_U$ 는 0임) 조건이 충족되는 한, 수입업자는 수입을 지속하게 될 것이며 수입량은 동등성을 인정하거나, 표시제로 수입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만약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설탕이나 밀가루와 같이 단일 품목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비용은 처음에 인증을 받을 때만 지출되고, 향후 상품 수입에는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들이 인증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림 6-5>에서 묘사한 AC''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평균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AC'과 같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평균 비용을 상승시킬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원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한 제품에 포함되는 모든 유기원료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인증을 받을 당시 한 번만 인증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탐색비용, 인증비용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그림 6-5>에서 묘사한 AC''과 같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균비용을 상승시킬 가능성 또한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일 품목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외국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들이 선택할 대안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국내로 수입하는 시나리오 2로 귀결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나 다원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특정국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최적 선택이 한국으로의 수입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시나리오 3으로 귀결된다면, 정부에서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3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혜택을 상호 비교해야 함.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이 중단된다면, 국산 유기가공식품 판매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자의 혜택 S1\_D는 S3\_D보다 더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에 정부의 최적 선택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하지만 이 경우 정부는 S1\_D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S1\_G를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1.3. 동등성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이해 해당사자별 혜택 비교

- 앞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특정국의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경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그림 6-6>에서 보면 S2\_U가 S3\_U보다 크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을 포기하는 것 보다는 유기 인증을 획득하여 수입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임.
-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동등성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을 시나리오 1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혜택과 시나리오 2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혜택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함. 이때의 비교는 S1\_D와 S2\_D의 상호 비교 및 S1\_G와 S2\_G의 상호 비교가 되어야 함.
  - 먼저 동등성 인정 여하에 따라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자들의 혜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판단해야 함.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등성 인정은 수입업자의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이윤에는 영향이 없음.
  - 따라서 S1\_D와 S2\_D는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자들의 혜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등성 인정과 불인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그림 6-6. 특정국 수입산 유기식품 수입업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정부의 최적 선택



- 다음으로는 동등성 인정 여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혜택을 검토해 보아야 함. 우리나라에서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유럽 등 외국의 통상문제 제기가 지속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CODEX 기준을 근거로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반면,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회적인 혜택을 예상하기 어려움.

#### 1.4. 동등성 인정 여부에 따른 미국 및 기타국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대응 시나리오와 예상되는 효과

- 동등성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유기가공식품 수입 1위 국가인 미국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유기가공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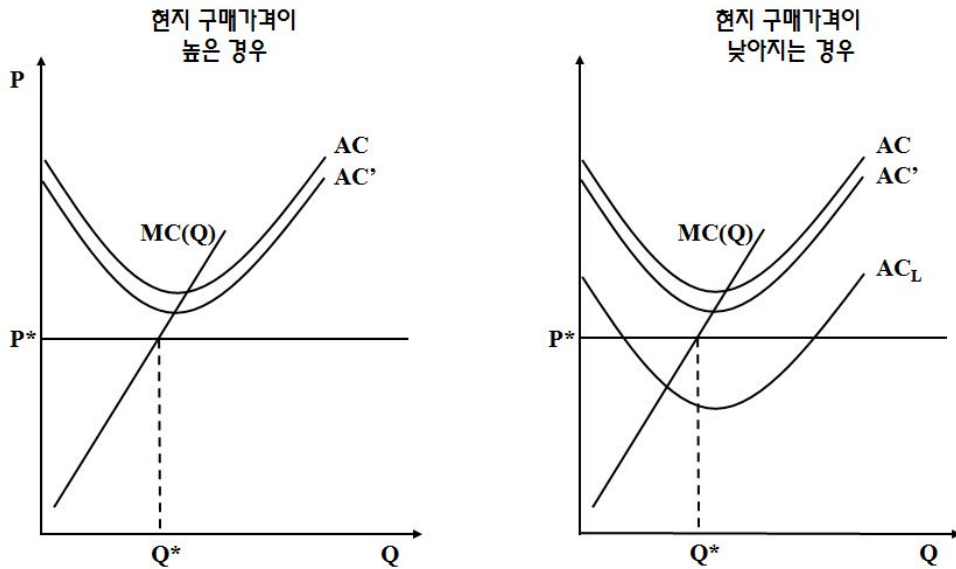
의 수입량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표 6-1>는 동등성 인정과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대응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예상효과를 정리한 것임.

표 6-1. 동등성 인정과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대응 및 단기·중장기 예상 효과

경우	수입산 식품 수입업자의 대응	예상 효과
동등성 인정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단기: 현재와 같은 수입추세가 지속될 전망 ·중장기: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기가공식품(잠재적 품목)도 국내에 수입될 수 있음 : 잠재적 품목의 수입 개시 가능
동등성 인정 하지 않음	우리나라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후 수출 (현행 방식대로 수출)	·단기: 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입추세가 지속될 전망. 비인증 품목 수출업자(혹은 국내 수입업자)에게 추가적인 인증비용 발생, 수입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중장기: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기가공식품(잠재적 품목)의 수입개시가 불가능
	국내 인증 요구를 무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중단

- <그림 6-6>에서 묘사한 상황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동등성 인정 여하에 따른 특정국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 증가 여부에 대한 분석이었음. 보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동등성 인정여부가 가져올 영향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는 유기 인증비용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구한 유기인증을 받지 못해서 수입 되고 있지 못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수입이 될 수 있을지, 수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나 수입이 될지에 대한 판단임.
- 이러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기 인증비용이 유기 식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데 드는 총 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임. 즉, 유기 인증비용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경우 동등성 인정은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유기 인증비용이 총 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미미하다면 동등성 인정 여부는 수입량 증가와 관계가 없음.

그림 6-7. 잠재적 품목 수입시의 평균 비용과 이에 따른 수입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품목(잠재적 품목) 중 단일 품목 유기 가공식품은 <그림 6-7>의 왼쪽 그래프와 같은 상황으로 묘사할 수 있음. 즉,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현지 구매가격, 운송 및 통관과 같은 부대비용, 그리고 유기 인증비용까지를 포함한 평균 비용 수준이 한국에서 판매할 때 얻는 수취가격  $P^*$  보다 매우 높은  $AC$ 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손실을 보게 되어 해당 품목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높은 평균 비용에서 유기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하게 되어 인증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더라도 여전히 평균비용은  $AC'$ 과 같은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즉, 잠재적 품목이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유기 인증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미국뿐만 아

나라 유럽 혹은 기타 국가로부터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들 잠재적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sup>10</sup>.

- <그림 6-7>의 오른쪽 그래프는 현재는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지 못하지만, 현지의 유기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ACL로 하락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이 경우는 수입업자에게 수반되는 평균비용보다 우리나라 내에서의 판매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수입을 개시하게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수입개시는 인증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구매가격이 하락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등성 인정에 따른 수입개시라고 할 수 없음.

## 2. 국내 유기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 2.1. 유기 농산물 수입 및 국내 시장 여건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5,721,950 달러의 유기 농산물이 수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필리핀에서의 수입액이 3,105,539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필리핀 다음으로는 뉴질랜드에서의 수입액이 1,120,522 달러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그 외에 수입액이 큰 나라는 호주와 중국임.
- 필리핀에서는 유기 바나나가 수입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키위가, 호

---

<sup>10</sup> 유기 농산물에 대한 인증비용이 유기 농산물 수입 시에 수반되는 수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음을 다음 절에서 포도의 예를 들어 분석할 것임.

주에서는 밀이, 중국에서는 참깨, 밀, 대두 등이 수입되고 있음. 미국은 블루베리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은 208,425 달러였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미국산 블루베리는 신선농산물 형태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냉동 “식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식품의 경우처럼 유기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기식품 표시제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즉, 우리나라의 집계 상으로는 미국산 유기농산물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은 총 292품목이며, 인증면적은 17,365ha, 인증건수는 19,518건, 출하량은 122,244톤으로 나타났음.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수입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만약 검역조건이나 관세조건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유기농산물이 수입될 수 없다면 동등성의 논의에서 우선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논의를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수입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유기농산물 31개 품목을 선정하였음. 이들 품목은 곡물류, 과일류, 과채류, 채소류의 주요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면적이 2010년 전체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의 77.6%를 차지함<표 6-2>.
  -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가격경쟁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신선도 유지, WTO/DDA 등 농산물무역협상, 식물방역법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임. 따라서 각각의 품목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수입 가능성을 검토함.

표 6-2. 주요 국산 유기농산물 생산현황

	품목류	면적	건수	출하량
쌀	곡류	7,377	1,316	25,491
사료작물	곡류	1,537	90	12,312
콩	곡류	556	538	663
밀	곡류	542	114	674
보리쌀	곡류	482	162	1,517
배추	엽경채류	246	793	8,500
고추	조미채소류	245	865	2,971
무	근채류	243	717	4,204
옥수수	곡류	180	207	902
감귤	과실류	151	124	2,065
매실	과실류	135	143	838
호박	과채류	135	385	1,760
양파	조미채소류	133	266	2,757
포도	과실류	120	121	1,159
당근	근채류	117	223	1,348
뽕은감	과실류	114	70	204
수박	과채류	112	38	802
토마토	과채류	111	322	4,776
상추	엽경채류	108	445	3,471
딸기	과채류	96	180	1,627
블루베리	과실류	82	116	261
브로코리	엽경채류	81	169	750
마늘	조미채소류	80	210	565
시금치	엽경채류	78	334	894
양배추	엽경채류	77	290	1,934
배	과실류	69	69	590
대파	조미채소류	68	281	1,770
방울토마토	과채류	57	147	1,788
사과	과실류	54	43	291
오이	과채류	54	215	1,423
참외	과채류	35	17	319
합	계	13,475	9,011	88,627
전	체	17,365	19,518	122,244
(비	중)	(77.6)	(46.2)	(72.5)

## ○ 곡물류는 쌀, 보리, 밀, 콩 등이 주요 품목임.

- 쌀은 농산물 무역협상 결과 2014년까지 최소시장접근(MMA)으로 8%까지 의무수입하고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고 있음. 관세화유예라는 특별조치기간 동안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택에 달려 있음. 관세화가 이루어질 경우 고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동등성 제도 도입과 유기쌀 수입은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보리의 경우 현행 299.7%, 콩의 경우 식용과 사료용 모두 현행 487%의 고관세율이고, TRQ로 수입될 경우 5%의 저 관세율을 보이고 있음. 옥수수 경우 식용과 사료용 모두 328%의 고관세율이고, TRQ로 수입될 경우 1.8%의 저 관세율을 보이고 있음.
- 밀의 경우 제분용과 사료용 모두 현행 1.8%의 저 관세율을 보이고 있음.
- 콩과 옥수수는 고관세이지만 TRQ 물량으로 들어올 경우 저 관세이므로 향후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재도 국내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유기 콩과 유기 옥수수가 TRQ 물량으로 수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수입이 늘 가능성은 낮아 보임. 밀의 경우도 국내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수입이 늘 가능성은 낮아 보임. 사료작물의 경우 유기 사료 조달이 불가능하여 현재도 대량 수입 중이므로 동등성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6-3. 곡물류 수입가능성 조건

품목	재배현황		수입가능성 조건
	면적(ha)	생산량(톤)	
쌀	7,377	25,491	최소시장접근만 수입, 관세화시 고관세율 적용
보리쌀	482	1,517	현행 고관세율 적용
콩	556	663	현행 고관세율, TRQ물량은 저관세율 적용
밀	542	674	현행 저관세율 적용
옥수수	180	902	현행 고관세율, TRQ물량은 저관세율 적용
사료작물	1,537	12,312	TRQ물량의 경우 저관세율 적용

- 과일류는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품목으로 대부분 분류되고 있음(식물방역법 제 4조 제1호 가목 및 제12조 제2항 관련).
- 사과, 배, 매실은 식물방역법상 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포도는 미국의 하와이주와 텍사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의 전 지역, 뉴질랜드의 전 지역을 제외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감귤은 미국의 하와이주와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의 규슈와 류큐 열도를 제외한 전지역, 뉴질랜드의 전 지역을 제외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감은 미국의 하와이주와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일본의 전 지역, 뉴질랜드의 전 지역을 제외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블루베리는 미국의 오레곤주산을 제외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레곤주산은 3~4년에 걸쳐 해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후 제외됨.

표 6-4. 과일류 수입가능성 조건

품목	재배현황		수입가능성 조건
	면적(ha)	생산량(톤)	
사과	54	291	식물방역법상 전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
배	69	590	식물방역법상 전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
포도	120	1,159	미국, 일본, 뉴질랜드로부터 수입 가능
감귤	151	2,065	미국, 일본, 뉴질랜드로부터 수입 가능
매실	135	838	식물방역법상 전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
뽕은감	114	204	미국, 일본, 뉴질랜드로부터 수입 가능
블루베리	82	261	미국 오레곤주로부터만 수입 가능

⇒ 포도, 감귤, 감의 경우 미국, 일본, 뉴질랜드로부터 수입이 가능하고 블루베리의 경우 미국의 오레곤 주로부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유기농산물 분석결과 미국으로부터는 포도와 블루베리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 감귤의 경우 2010년 수입실적이 없고, 일반 감의 경우 2010년에 76톤 정도(국내생산량의 0.05%)만 수입되어 앞으로 이러한 품목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뉴질랜드로부터도 포도, 감귤, 감이 일부 수입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뉴질랜드

로부터 이러한 품목의 수입이 미미한 점(2010년 기준 꺾, 포도 수입실적 없고, 감은 0.08톤 수입)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으로부터는 방사능오염문제로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품목으로 대부분 분류되고 있음(식물방역법 제 4조 제1호 가목 및 제12조 제2항 관련).

- 오이, 수박은 식물방역법상 전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호박은 일본의 전 지역과 뉴질랜드의 전 지역을 제외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참외는 일본의 전 지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 지역을 제외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토마토와 딸기는 일본의 전 지역을 제외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호박의 경우 일본과 뉴질랜드, 참외의 경우 일본과 우즈베키스탄, 토마토와 딸기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호박의 경우 일본과 뉴질랜드로부터 단호박이 수입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조선애호박이나 둥근애호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외, 토마토, 딸기의 경우도 일본의 방사능오염문제로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표 6-5. 과채류 수입가능성 조건

품목	재배현황		수입가능성 조건
	면적(ha)	생산량(톤)	
오이	54	1,423	식물방역법상 전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
호박	135	1,760	일본, 뉴질랜드로부터 수입 가능
수박	112	802	식물방역법상 전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
참외	35	319	일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 가능
방울토마토	57	1,788	일본부터만 수입 가능
토마토	111	4,776	일본부터만 수입 가능
딸기	96	1,627	일본부터만 수입 가능



- 채소류의 경우는 식물방역법, 신선도 문제, 높은 관세율의 문제 등으로 수입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고추의 관세율은 270%, 마늘의 관세율은 370%, 양파의 관세율은 135% 등으로 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감자와 고구마는 미국, 일본, 호주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표 6-6. 채소류 수입가능성 조건

품목	재배현황		수입가능성 조건
	면적(ha)	생산량(톤)	
배추	246	8,500	외국산 신선도문제, 중국산 선호도 낮음
무	243	4,204	외국산 신선도문제, 중국산 선호도 낮음
고추	245	2,971	현행 270%의 고관세율 적용
마늘	80	565	현행 370%의 고관세율 적용
양파	133	2,757	현행 135%의 고관세율 적용
당근	117	1,348	외국산 신선도문제, 중국산 선호도 낮음
상추	108	3,471	외국산 신선도문제, 중국산 선호도 낮음
양배추	77	1,934	외국산 신선도문제, 중국산 선호도 낮음
브로콜리	81	750	외국산 신선도문제, 중국산 선호도 낮음
감자	78	894	미국, 일본, 호주로부터 수입 가능
고구마	68	1,770	미국, 일본, 호주로부터 수입 가능

⇒ 고추, 마늘, 양파는 고관세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배추, 무, 당근, 상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거리가 먼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나 소비자들이 안전성 문제로 중국산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즉 기본적으로 유기농산물 소비자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은데다 고소득 계층에 속해 있으므로(김창길 외, 2008) 중국산을 소비하려 하지 않을 것임. 감자와 고구마는 미국, 일본, 호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하나 미국이나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신선도 문제로 수입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일본의 경우 최근의 방사능오염문제로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임.

표 6-7.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능 품목 현황(종합)

	품목류	식물방역법	농산물협상/ 고관세	신선도
곡물류	쌀	-	○	-
	보리쌀	-	○	-
	콩	-	△	-
	밀	-	-	-
	옥수수	-	△	-
	사료작물	-	△	-
과일류	사과	○	-	-
	배	○	-	-
	포도	△	-	-
	감귤	△	-	-
	매실	○	-	-
	곶감	△	-	-
	블루베리	△	-	-
과채류	오이	○	-	-
	호박	△	-	-
	수박	○	-	-
	참외	△	-	-
	방울토마토	△	-	-
	토마토	△	-	-
	딸기	△	-	-
채소류	배추	-	-	△
	무	-	-	△
	고추	-	○	△
	마늘	-	○	△
	양파	-	○	△
	당근	-	-	△
	상추	-	-	△
	양배추	-	-	△
	브로콜리	-	-	△
	감자	△	-	△
	고구마	△	-	△

- 주 1) ‘식물방역법’, ‘농산물협상/관세’, ‘신선도’의 ○는 수입이 각각의 조건의 영향을 받게 됨을 나타냄.
- 2) ‘식물방역법’의 △는 일부지역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됨을 나타냄. ‘농산물협상/고관세’의 △는 양허관세는 고관세이나 TRQ물량으로 수입될 경우 저 관세를 나타냄. ‘신선도’의 △는 중국, 일본 등 가까운 나라로부터의 수입 가능성을 나타냄.

- 국내에 유기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 수출자료가 비교적 갖추어져 있고,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인 미국을 사례로 유기농산물의 수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2. 동등성 인정에 따른 수입산 유기 농산물의 수입 가능성

- 미국산 유기 농산물과 같이 현재 인증 받지 못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 않은 수입 유기 농산물은 유기가공식품 시장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가져오는 효과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 동등성 인정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해야 함을 말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현재 표시제를 통하여서 수입되고 있는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그 수입량이 증가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던 반면, 수입 유기 농산물의 경우에는 현재 수입되고 있지 않은 수입 유기 농산물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과연 수입이 개시되어 국산 유기 농산물과 경쟁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함.
- 분석은 현재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왜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함. 이를 위해 유기 농산물 수출 잠재력이 크고, 통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미국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표 6-8>, <부표 2-1>, <부표 2-2>는 2011년 현재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유기인증면적과 수출하고 있는 주요 유기 농산물 품목을 나타낸 것임. 금액 기준으로 상위 3대 품목은 양상추, 체리, 사과인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이 신선채소와 과일인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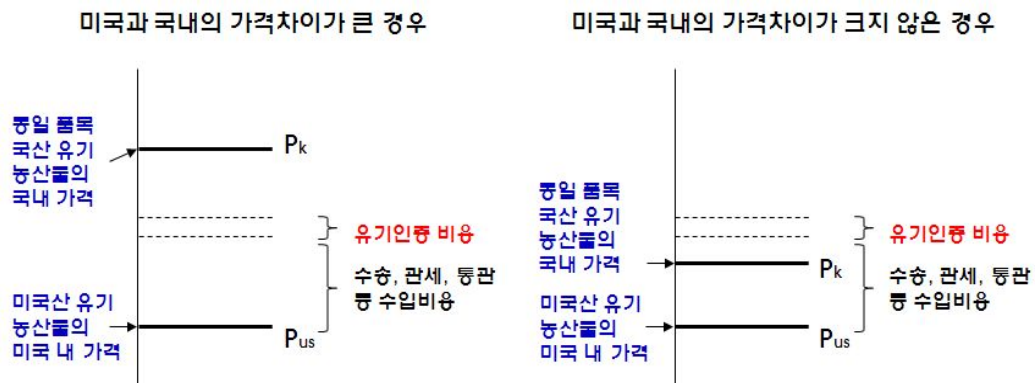
표 6-8. 미국의 유기농산물 수출 품목

단위: 천달러, 톤, %

품목명	수출액	수출량	금액 비중	수량 비중
상추(결구상추제외), 신선/냉동	57,693	22,735	22.3	1.7
체리, 신선	30,524	4,965	11.8	0.4
사과, 신선	24,128	1,016,372	9.3	75.9
케첩 등 토마토소스	18,768	18,724	7.2	1.4
당근, 신선/냉동	16,956	11,718	6.5	0.9
블루베리, 신선	15,587	2,942	6.0	0.2
시금치, 신선/냉동	13,908	2,168	5.4	0.2
오렌지, 신선/건조	12,537	13,492	4.8	1.0
컬리플라워, 신선/냉동	11,892	12,694	4.6	0.9
포도, 신선	11,144	3,544	4.3	0.3
딸기, 신선	10,971	2,786	4.2	0.2
볶은커피두(카페인제거커피제외)	8,330	23,545	3.2	1.8
브리콜리, 신선/냉동	6,894	4,855	2.7	0.4
샐러리, 신선/냉동	4,253	4,483	1.6	0.3
레몬, 신선/건조	4,232	2,964	1.6	0.2
배/마르멜로, 신선	2,875	141,295	1.1	10.6
토마토 기타, 신선/냉동	2,079	751	0.8	0.1
고추, 신선/냉동	1,549	612	0.6	0.0
결구상추, 신선/냉동	1,331	1,494	0.5	0.1
감자, 신선/냉동 기타	1,273	45,054	0.5	3.4
체리토마토, 신선/냉동	1,002	678	0.4	0.1
로마플럼토마토, 신선/냉동	918	704	0.4	0.1
양파(OnionSets), 신선/냉동	223	529	0.1	0.0
합계	259,064	1,339,105	100.0	100.0

자료: USDA FAS, 2011년 1월~8월

그림 6-8. 미국산 유기 농산물과 국산 유기 농산물의 가격 차이와 수입비용 및 유기 인증비용



- 이와 같은 수출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수입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그림 6-8>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미국산 유기 농산물의 미국내 가격과 동일 품목의 국산 유기농산물의 국내 가격이 차이가 수송이나 통관 그리고 유기인증비용을 합산한 수입비용보다 더 큰 경우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유기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수입하기만 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유기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왼쪽 그래프와 같이 미국 내외 국내의 유기농산물 가격차이가 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국내로 수입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두 번째로는 <그림 6-8>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국내의 가격차이가 현격하지 않아서 수입비용을 감안할 경우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할 경우 국내 동일 품목의 유기 농산물과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경우임.

### 2.2.1.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입되고 있지 못하는 수입산 유기농산물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국내로 수입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첫째로 유기 농산물의 부패 가능성임.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유기 농산물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식물검역법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장성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부패 가능성이 적은 곡물류임.
- 물량 기준으로 호주와 필리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양의 유기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인접국인 중국인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기 농산물은 모두 곡물임. 인접국인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부패문제 때문에 신선채소와 과일을 수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리가 매우 먼 미국에서 유기 신선채소와 과일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 수출 대상국을 보면 <표 6-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물량기준으로 약 86%를 모두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역시 부패가 쉬운 신선 채소와 과일은 멀리 떨어진 나라로는 수출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음<sup>11</sup>.

---

11 일부 동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는 품목은 소독이나 살균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선형태로 수출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하고서도 수지가 맞는 일부 고가의 유기 과일인 것으로 나타남.

표 6-9. 미국의 유기농산물 수출 상위 20개국(수출액 비중)

단위: 천달러, 톤, %

국가명	수출액(\$)	수출량(ton)	가격비중	수량비중
캐나다	167,412	448,252	64.6	33.5
멕시코	19,397	711,680	7.5	53.1
일본	16,839	13,375	6.5	1.0
대만	13,504	12,113	5.2	0.9
홍콩	10,004	15,951	3.9	1.2
호주	6,399	1,679	2.5	0.1
중국	4,528	14,178	1.7	1.1
한국	2,510	1,603	1.0	0.1
네덜란드	1,981	2,744	0.8	0.2
뉴질랜드	1,506	469	0.6	0.0
인도	1,413	50,198	0.5	3.7
싱가포르	1,363	1,369	0.5	0.1
말레이시아	1,292	1,298	0.5	0.1
영국	1,238	2,523	0.5	0.2
타이	1,143	3,230	0.4	0.2
벨기에-룩셈부르크	1,052	309	0.4	0.0
방글라데시	1,022	1,243	0.4	0.1
이스라엘	718	27,244	0.3	2.0
스리랑카	477	727	0.2	0.1
브라질	457	64	0.2	0.0
기타국가	4,811	28,856	1.9	2.2
총합계	259,064	1,339,105	100.0	100.0

자료: USDA FAS, 2011년 1월~8월

○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있는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검역문제임.

- 수입산, 특히 미국산 주요 유기 농산물인 채소와 과일은 미국의 수출항에서는 유기 농산물 형태로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철차를 거치는 단계에서는 소독과 살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유기 농산물로 판매되기가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미국산 포도, 체리, 양상추는 미국에서는 유기 농산물로 우리나라로 수출하지만 국내 도착이후 검역과 통관을 거친 이후는 일반 농산물로 판매되고

있음 (미국을 통해 <표 6-9>와 같이 집계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유기 농산물 수출실적은 국내에서는 유기농산물 수입실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sup>12</sup>

- 만일 미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수입되지 못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근거에 기인한다면, 수입산 유기 농산물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입산 유기 농산물은 국내로 수입되기 어려울 것임. 해외에서 수출하는 유기 농산물이 대부분 신선채소와 과일이라는 점은 수송상의 문제점과 검역상의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동등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수입산 유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수입되기 어려운 여건일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 2.2.2.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입되고 있지 못하는 수입산 유기 농산물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경우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수입되고 있지 못하는 수입산 유기 농산물의 경우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산 유기 농산물의 경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현재 수입산 유기 농산물의 중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국내와 미국내의 가격 차이보다 수송, 통관, 유기인증비용 등을 합산한 수입비용이 더 큰 <그림 6-8>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입비용 중에서 유기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

12 현재 우리나라 검역법상 수출국 현지에서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을 경우 국내 통관 시 추가적인 검역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은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매우 많은 품목의 신선채소와 과일이 검역법에 의해 수입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산 포도의 경우 유기인증을 획득하면 국내에 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될 수 있으나, 미국산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캠벨과는 다른 품종이라서 국산 유기포도와 경합관계로 보는데 한계가 있음.



동등성 인정에 따른 미국산 유기 농산물의 수입개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함. 만일 수입 비용 중에서 유기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경우 동등성을 인정하게 되면 수입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현재에는 수입되고 있지 못하는 미국산 유기 농산물의 수입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미국에서 국내에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 비용을 계산해 보았음.
  - 우선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경우 2011년 1월~8월의 평균 해상 운송비용은 LA출발을 기준으로 할 경우 <표 6-10> 과 같이 20피트 당 약 1,736천원인 것으로 계산됨.
  -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의 육상 수송요금은 행선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표 6-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피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518천원에서 672천원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계산됨.

표 6-10. 부산~LA 구간 2011년 1~8월 해상운임

단위: 달러, 천원

구분	환율	TEU(20피트)		FEU(40피트)	
		USD	천원	USD	천원
1월	1,120	1,840	2,061	2,300	2,576
2월	1,118	1,550	1,733	1,970	2,203
3월	1,122	1,450	1,628	1,900	2,133
4월	1,087	1,550	1,685	1,800	1,956
5월	1,084	1,550	1,679	1,900	2,059
6월	1,081	1,550	1,676	1,900	2,054
7월	1,060	1,450	1,536	1,820	1,928
8월	1,073	1,770	1,900	2,050	2,200
평균	1,093	1,589	1,736	1,955	2,136

주: 해상 운임은 컨테이너 단위로 가격 책정

환율은 2011년 1~8월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화주협의회(<http://shippersgate.kita.net/>).

표 6-11. 컨테이너 수송 육상 요금

단위: 원

행선지	구분		행선지	구분	
	40피트	20피트		40피트	20피트
서울	590,000	531,000	인천, 강화	747,000	672,000
의왕	576,000	518,000	의정부	677,000	609,000
부천	598,000	538,000	하남	681,000	613,000
수원	576,000	518,000	화성	576,000	518,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화주협의회(<http://shippersgate.kita.net/>)

- 항공을 통해 운송된다고 가정할 경우, <표 6-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1년 1월~8월의 평균 항공운임은 LA출발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물건 실 중량 기준 톤당 3,462천원으로 계산됨.

표 6-12. 인천~LA 구간 1~8월 항공운임

단위: 원/kg

구분	45kg	100kg	300kg	500kg	1000kg
1월	4,300	4,200	4,100	4,000	3,900
2월	4,300	4,300	4,000	4,000	3,900
3월	3,800	3,800	3,700	3,700	3,600
4월	3,800	3,800	3,800	3,700	3,600
5월	3,800	3,800	3,700	3,500	3,500
6월	0	0	3,200	3,100	3,000
7월	3,300	3,200	3,100	3,000	2,900
8월	2,700	2,700	2,700	2,700	3,300
평균	3,714	3,686	3,538	3,463	3,463

주: 물건 실 중량 및 용적 중량 중 무거운 것으로 하며 중량 당 단가가 다름.

예) 1,000kg 경우, 1월 = 3,900원 \* 1,000 = 3,900,000원

6월은 45kg, 100kg에 대한 운임 사례가 없었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화주협의회(<http://shippersgate.kita.net/>)

- 수송비용 이외에 기타 수입에 필요한 비용에는 <표 6-13>과 같이 컨테이너 세, 화물입출항료, 통관수수료, 관세 등이 추가됨.

표 6-13. 기타 비용

컨테이너 세	20피트 2만원, 40피트 4만원
화물입출항료	일반화물(부산항)수입은 톤당323원, 수출은 톤당192원 FCL컨테이너화물20피트 4,200원, 40피트 8,400원
통관수수료	수출의 경우 감가(FOB)의 0.15%로서 최저 12,000원에서 최고 350,000원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수입의 경우는 감가(CIF)의 0.2%로, 최저 27,000원에서 최고 950,000원까지 책정.

주: 통관수수료는 세관장 승인요금에서 99년부터 자율화됨. 따라서 현재 평균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자율화 이전 기준 제시.

- 이와 같은 수송과 통관비용을 합산하면 <표 6-14>과 같이 계산됨.

표 6-14. 미국산 유기포도 20톤 수입의 경우(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량 기준)

단위: 원

항공	운임료	65,200,000
	통관수수료	27,000~950,000
	합계	65,227,000~66,150,000
해상	운임료	1,735,916
	컨테이너 수송(국내, 서울)	531,000
	화물입출항료	4,200
	컨테이너 세	20,000
	통관수수료	27,000~950,000
	합계	2,318,116~3,241,116

주: 그 외 해상, 항공운임과 관련된 비용은 관련업체, 수입 장소, 수입국, 수입품목, 수입량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생략함. 검역비용 중 식물 검역비는 무료이므로 제외. 환율은 2011년 1~8월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1,092.62원 적용

- 해상운송 보다 항공운송을 통한 수입비용이 월등히 커 현실적으로 항공운송을 통해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을 통해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유기 인증비용이 전체 수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산하기로 함.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해외 유기인증비용은 건당 1,587천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와 같은 유기인증비용은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인증 1건당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수입규모가 클수록 수입 유기 농산물 1kg당 유기인증비용은 적어지게 됨.
- 미국산 유기포도를 해상을 통해 국내에 수입할 때 수반되는 통관, 수송비용과 관세 및 인증비용을 계산함<<표 6-15>. 물론 평균 수송비용이나 통관 수수료도 수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자세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 6-8>에서 계산된 비용의 평균 값을 kg단위로 환산하였으며, kg당 관세는 미국산 유기포도의 수출가격 2,624/kg에 포도에 현재 적용되는 관세율 45%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 <표 6-15>의 계산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수입규모가 매우 적은 1톤일 경우 kg당 평균 총수입비용에서 차지하는 인증비용은 55% 수준으로 매우 크지만, 총 수입규모가 10톤일 경우 유기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수준으로 줄어들며, 총 수입규모가 20톤일 경우(컨테이너1개 분량) kg당 수입비용에서 유기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줄어듦.

표 6-15. 미국산 유기포도를 수입할 경우

단위: 원

총 수입규모	1kg 당 평균 운송 및 통관수수료	kg당 평균 관세 <sup>1)</sup>	1kg당 평균인증비용 (A)	kg당 평균 수입 비용 합계(B)	A/B
1톤일 경우	139.0	1,180.7	1587.0	2,906.7	55%
5톤일 경우	139.0	1,180.7	317.4	1,637.1	19%
10톤일 경우	139.0	1,180.7	158.7	1,478.4	11%
20톤일 경우	139.0	1,180.7	79.4	1,399.0	6 %
50톤일 경우	139.0	1,180.7	31.7	1,351.4	2 %
100톤일 경우	139.0	1,180.7	15.9	1,335.5	1 %

주: 2011년 기준으로 미국산 유기포도의 현지 수출가격은 kg당 2,624원이며, 국내로 수입될 경우 관세율은 45%가 적용됨.

- 수입업체가 사실상 컨테이너 1개 미만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은 수입비용 이외에 국내시장에 대한 마케팅이나 기타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 규모임. 따라서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 총비용 중에서 유기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미국산 유기 농산물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라면(즉, 미국내 유기 농산물 가격과 국내 동일 품목의 유기 농산물 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수입비용을 감안할 경우 현지 구매가격과 수입비용을 합산한 것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 보다 높은 수준인 <그림 6-8>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경우라면), 설사 우리나라가 동등성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입비용을 현저히 저하시켜서 수입을 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음.

### 2.2.3. 동등성 인정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검토

- 미국이 일본과 대만에 수출하고 있는 신선유기농산물은 <표 6-16>과 같음. 이러한 품목들은 미국이 동등성하에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비조건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리적으로 유사한 한국에도 수출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인증제도 하에서도 한국에 수출을 시도한 품목으로 포도와 체리가 있음. 이들 품목은 미국산 유기농산물이지만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한국에 유통된 것으로 보임. 결국 동등성이 되었을 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유기농산물로는 현재도 수출을 시도하고 있거나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 대만에 수출하고 있는 포도, 체리, 딸기, 블루베리, 사과 등 5가지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의 미국산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에 대한 식물방역법을 보면 살펴보면 포도는 하와이와 텍사스산을 제외하고 가능함. 체리는 소독조건만 충족시키면 가능함. 하지만 소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유기농산물로 유

통될 수 없음. 블루베리는 오레곤주산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고, 딸기와 사과는 금지되어 있음. 블루베리의 경우 오레곤주산은 3~4년에 걸쳐 해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후 제외됨.

표 6-16. 미국 신선유기농산물의 동아시아 주요국 수출현황

단위: 백만달러

국가	품목	단위	금액 (천달러)	수량(톤)
일본	신선 유기농 포도	MT	308	67
일본	신선 유기농 체리	MT	5,085	667
일본	신선 유기농 딸기	MT	162	19
일본	신선 유기농 껌트블루베리	MT	183	23
대만	신선 유기농 포도	MT	35	16
대만	신선 유기농 사과	42LBC	32	1,102
대만	신선 유기농 체리	MT	3,765	632
한국	신선 유기농 포도	MT	1,797	748
한국	신선 유기농 체리	MT	89	15

자료: 미국 상무부 조사국, 외국무역통계

- 향후 동등성제도가 도입된다면 미국으로부터 수입 가능한 품목은 포도, 블루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포도와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현재 매우 적은 수준임.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기포도 면적은 120ha, 블루베리 면적은 80ha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0년 기준 전체포도면적은 17,347ha(통계청), 전체 블루베리 면적은 534ha(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임.
  - 유기 블루베리의 생산 및 수입동향은 파악되지 않으나 유기 블루베리의 최근 가격 하락요인을 일반 블루베리의 동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임. 즉 일반 블루베리 기준 블루베리 생산면적이 2007년 112ha에서 2010년 534ha로 급증하였고, 수입량도 2009년 812톤에서 2010년 4,718톤으로 급증하였기(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때문에 유기 블루베리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 3. 기타 관련분야 영향

- 표시제하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가공제품은 대부분 반가공 형태로 수입되어 우리나라에서 가공제품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동등성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공제품과 경쟁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표 2-11>. 즉, 과채가공품, 과채페이스트, 과실쥬스, 밀가루, 콩기름 등 주요 가공품은 반 가공형태로 수입되고 있음.
- 김창길 외 2인(2008)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성향을 조사·분석하였음.
  - 친환경농산물 소비성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비교에 있어서 국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비중이 82.4%인 반면, 수입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는 비중은 4.3%였음. 대부분의 소비자는 국산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국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9. 국산 및 수입유기농산물의 안전성 신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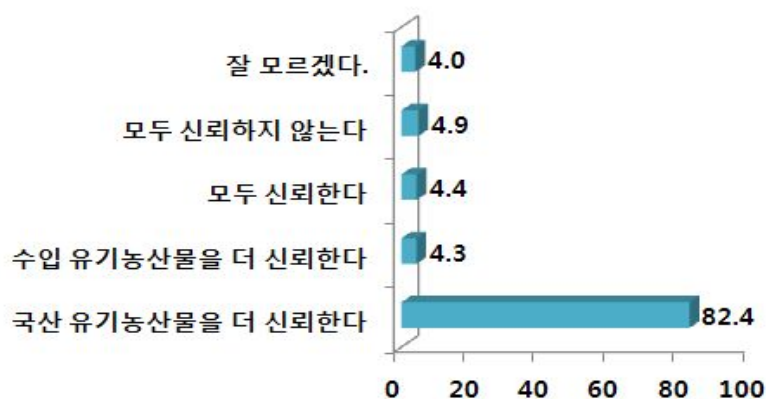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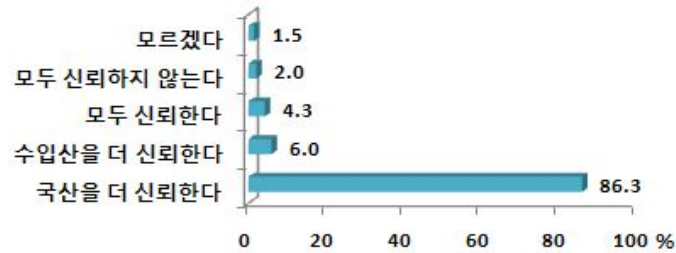


그림 6-10. 국산 및 수입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 신뢰 비교



○ 정학균, 장정경(2011)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한 바 있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산을 더 신뢰한다.’는 의견이 86.3%로 아주 높은 편이었으며, ‘수입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0%에 그침<그림 6-10>.

○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는 67.5%, ‘품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21.3%로 나타남.

- 국산에 대한 안전성의 신뢰도가 크게 높지만, 실제적인 품목선택에 있어서는 국산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이는 실제적으로 유기가공식품 구입시 가격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임.
-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보다 외국산 가공제품의 수입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화된 선호가 있기 때문에 국산원료로 만든 국산유기가공식품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표 6-17. 국산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선호도 비교

설문내용	단위: %
	응답률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67.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11.3
품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겠다.	21.3



## 제 7 장

### 동등성 추진에 따른 대응방향

#### 1.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

##### 1.1. 유기농업의 확고한 토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 동등성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유기농식품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식품 원료를 공급하는 유기농업의 확고한 토대가 구축이 관건임.
- 유기농업 실천농가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도의 보완과 직불금의 지원단가 상향조정, 기술지원 등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 중단과 2015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유기농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연차별 차등 지급안으로 경우 논 농업에서 유기재배 1~2년차(1단계)는 60~70만원, 3~4년차(2단계) 50~60만원, 5년차 이후(3단계)는 30만원 수준에서 10년간 지급토록 함. 한편 무농약은 4년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2단계에서 중단함. 밭 농업의 경우 유기재배 1~2

년차는 120~130만원, 3~4년차는 100~110만원, 5년차 이상은 60만원 수준에서 10년간 지급토록 함(김창길 외 3인, 2009).

- 친환경지구·광역친환경단지 내 유기농 면적을 확대, 지속가능한 「유기농 특구」등 구축함. 친환경유기농업과 유통·가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기존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조성지역은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유리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유기식품 명품화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100개 업체 지원 등 가공업체 지원도 강화해야 함.
- 국내 주요작물(식량, 과수, 특용 등) 및 축종에 대한 유기생산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유기농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특별로 ‘유기농 전문기술 보급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함.

## 1.2. 유기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 산지 유기농산물 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품질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함.
  - 국산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식품가공업체에 대한 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함.
- 국산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유기가공식품 원료 구매자금, 시설개보수 자금, 운영비 지원조건 개선 등을 통한 국산 유기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계약재배 등 구매실적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의 인센티브를 부여
- 유기농식품 생산단지 확대와 유기가공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육성
- 농공재배사업 확산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유기두류 생산기반을 조성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실천농가 비중이 높고 유기가공식품 분야의 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단지를 선발하여 유기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유기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토록 함.
-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대단지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여 유기농식품 클러스터(또는 유기농 푸드밸리)를 구축함.

## 2. 외부 여건변화를 반영한 관련제도의 개편

- 유기식품 관련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단일 법령에 규정
  - 유기농산물 생산·제조·유통·사후관리 등에 대한 일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 운영체제를 마련함.
  - 단일법령 제정 및 시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동등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함.
- 향후 동등성제도를 추진한다면 정부, 생산자, 수입/가공업자, 소비자 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유기농산물 수입가능성 분석결과 현재 유기농산물 수입이 예상되는 포도, 블루베리 등 생산농가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동등성은 제외하고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제도를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동등성 제도 도입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영향을 받는 품목의 경우 보전대책 등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임.

### 3. 동등성 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 국가 간 동등성 협정을 추진할 경우 단기간에 많은 국가와 동등성 협약을 추진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유기식품 가공 산업의 원료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동등성 협정을 추진할 때에는 단기간이지만 이러한 원료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가 간 동등성 협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전 세계 약 10 국가와 실질적으로 유기식품 동등성 등 협상 추진이 예상됨.
  - 국가 간 동등성 협약 체결되기 전 개별 국가별로 동등성 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을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품목별 가격, 생산량, 출하량, 수출입량 등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수출입 세번(tariff line)을 유기/비유기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동등성 협상 추진 시 상대국의 유기제도 검토, 현지실사(1~2회)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임.
  -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기식품 생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10여 개국의 유기제도의 검토와 함께 해당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유기식

품의 가격경쟁력, 해당 국가에 수출할 경우의 검역조건 및 관세 등 우리나라의 유기식품 수출여건을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서 동등성이 체결될 경우 유기농식품 수출품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인증기관의 사업자 인증절차를 합리화하고 국제 운용 사례 준용
  - 인증기관의 현장실사 이전에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인증신청자(농가, 제조업체 등)가 생산·사육·가공·취급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유기계획서(Organic Plan, OP)의 작성서식을 규정화하여 작성토록 제도화함.
- 사후관리 중심의 인증제도를 과정 통제 중심으로 개선
  - 과정통제 중심으로 인증절차를 정립하고 인증기준도 개선함. 인증절차는 유기계획서 제출(신청자)→유기계획서 승인(인증기관)→계획서 실행(신청자)→현장실사/인증/사후관리(인증기관)의 단계로 진행토록 함.
  -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토양, 수질, 퇴비 등에 대한 불검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함.

#### 4. 관련주체별 역할분담과 협력 강화

- 유기식품에 대한 동등성을 추진하는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유기농업 실천농가, 가공업자, 소비자 등 관련주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 정부는 농가, 가공업자, 소비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동등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별 동등성 추진에 따른 동등성 추진 환경 조사, 협상, 모니터링 등 관련된 제반업무를 추진할 소요인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영

향분석 용역을 추진하며, 국내 인증시스템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유기농업 실천농가와 가공업자는 우리나라 유기식품 생산에 있어 신뢰성과 품질제고 노력을 지속하며, 동시에 동등성 제도를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는 국산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대안으로 떠오른 유기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자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제 8 장

---

### 요약 및 결론

-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유기가공식품의 교역확대에 대비하여 동등성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전적 영향분석은 정책담당자와 친환경농업단체 및 유관기관의 중요한 관심사임. 이 연구는 유기식품인증제도 동등성 추진에 따른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유기식품산업 시장구조를 살펴보면(2008년 기준) 전체 4,043억 원 가운데 신선이 46.6%, 가공이 53.4%를 차지하고 있음. 국산의 비중을 보면 신선인 경우 83%인데 비해 가공인 경우 16.1%로 국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산물 수입은 2006년 6.8천톤에서 2009년 10.3천톤, 2010년 13.8천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유기가공식품은 대부분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물량이며 수입량은 2006년 11천톤, 2008년 18천톤, 2009년 13천톤으로 나타남. 2009년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은 금액기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동등성 제도 도입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가공식품 표시제의 하나의 대안

으로 추진되었으나 동등성 제도가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해서 까지도 관련이 되어 유기농산물에 대한 동등성 관련 이슈가 부각됨. 유기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표시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동등성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유기식품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

- 동등성 관련 국제기준을 검토한 결과 WTO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협정과 유기제품에 관한 국제표준인 CODEX에 동등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EU,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인증제도에 동등성 근거가 있음.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간 상호동등성 협정, 미국과 일본 간 수출협정, 캐나다와 EU간 상호동등성 협정 등 사례들이 있음.
- 동등성 제도 도입이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기농산물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게임 나무(game tree), 이해당사자들의 편익(benefit) 비교, 유기농산물의 경우 수입비용에서 유기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계산하였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유기농산물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음.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동등성 제도가 현재 존치하고 있는 표시제와 제도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등성 제도가 도입된다 하여도 수입량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인증제도와 동등성제도를 비교할 경우 인증제도에 의해 추가되는 고정비용은 이윤극대화 경제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수입량 증가에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됨.
-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예상되는 대응과 이에 따른 정부의 최적 선택을 분석한 결과, 유기가공식품 수입업자의 경우 유기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인 것으로 나타남. 국산 유기가공식품 생산자들의 경우 동등성 인정과 불인정은 무차별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과적



으로 통상문제 등 기타 사회적비용(이익)을 고려할 때 정부의 동등성 제도 도입은 현실적인 여건에서 최적의 선택으로 분석됨.

- 동등성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다원료 유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인증제도에 의해 수입비용이 과다하여 수입업자가 한국으로의 수입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때에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자의 혜택과 동등성을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여 정부의 최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유기농산물의 경우도 인증제도로 추가되는 고정비용은 이윤극대화 경제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 또, 미국산 유기포도를 수입할 경우의 예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입비용에서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총 수입 규모가 100톤일 때 kg 당 평균 수입비용에서 인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따라서 인증제도와 동등성제도를 비교한 결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유기농산물 수입의 시장조건을 살펴본 결과 밀, 콩, 옥수수 등 곡물류의 경우 현재의 수입물량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므로 동등성 제도 도입에 따른 수입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과일류는 뉴질랜드로부터 포도, 감귤, 감이 일부 수입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뉴질랜드로부터 이러한 품목의 수입이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는 식물방역법에 의해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채소류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고관세로 수입이 어려워 보이고, 배추, 무, 당근, 상추 등 신선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나 소비자들이 중국산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량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인증제도하에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신선유기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법으로 일방적 동등성제도 하에서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대만의 수입품목을 살펴본 결과,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신선유기농산물로는 포도, 체리, 딸기, 블루베리, 사과 등 5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검역조건을 고려하면 수입가능 품목은 포도와 블루베리로 한정됨.

- 현재 유기농식품산업의 국내 기반은 취약한 상태에 있고, 특히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유기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유기농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어느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향후 해당 상대국과의 동등성 협정을 체결에 앞서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특히 상호 동등성 인정의 협정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내 담당부서의 전담인력의 확충과 정부,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기식품동등성심의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각 관련주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동등성제도의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유기식품분야의 동등성 제도가 도입되면 특정국가와의 유기식품의 교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국내외적으로 유기농식품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산업 분야로 미래에 유기농식품 산업이 확실하게 정착하여 해외 유기농산물과의 경쟁력(가격 및 품질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부록 1

##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

부표 1-1.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총괄, 2006~'08 평균)

번호	국가명	인증기관수*	업체수	품목수(건수)	중량(t)	
1	미국	55	208	103(1,090)	4,071	
2	EU	이탈리아	13	87	43(250)	1,300
		독일	23	61	61(324)	640
		오스트리아	7	12	25(194)	352
		벨기에	2	9	12(55)	184
		프랑스	6	58	48(243)	109
		네덜란드	2	17	21(50)	108
		스페인	27	29	9(36)	94
		영국	13	30	31(64)	75
		덴마크	12	6	4(11)	28
		아일랜드	3	2	2(3)	27
		EU합계	113	318	260(1,235)	2,925
3	중국	30	29	18(118)	1,946	
4	호주	7	25	24(136)	1,933	
5	브라질	1	29	19(92)	1,438	
6	터키	13	20	14(55)	809	
7	파라과이	-	5	4(21)	634	
8	태국	-	3	1(3)	294	
9	콜롬비아	7	6	7(19)	224	
10	뉴질랜드	1	18	16(88)	168	
11	일본	59	48	23(167)	168	
12	멕시코	-	7	5(18)	143	
13	스위스	4	18	23(109)	120	
14	아르헨티나	13	7	5(24)	132	
15	캐나다	11	27	18(45)	56	
16	코스타리카	6	2	1(1)	33	
17	러시아	-	1	1(1)	23	
18	남아프리카	-	2	1(4)	5	
19	에콰도르	4	3	1(2)	3	
20	베트남	-	1	1(1)	3	
21	인도	12	4	3(5)	2	
22	폴리네시아	-	2	2(1)	1	
23	이스라엘	3	3	2(3)	1	
24	캄보디아	-	1	1	1	
25	피지	-	1	1	0	
26	네팔	-	1	1	0	
27	파키스탄	-	1	1	0	
총합계		345	790	168(3,386)	15,142	

주: 인증기관수는 현행 표시제하에서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의 전체 인증기관을 의미함. 실제 우리나라로의 수출품을 인증한 기관의 수가 아님(칠레 5개소, 필리핀 1개소 포함).

부표 1-2. 유기가공식품 국가별, 품목별 수입현황(2006~'08 평균)

국가	품목명	중량(kg)	국가	품목명	중량(kg)
미 국	과·채가공품	1,613,324	이 탈 리 아	과·채페이스트	966,082
	과실쥬스	443,890		과·채가공품	144,033
	강력밀가루	372,910		압착올리브유	70,739
	기타가공품	200,238		스파게티	33,985
	콩기름	149,015		감식초이외의과실양조식초	17,909
	과·채페이스트	116,812		파스타류	11,743
	과자류	109,933		해바라기유	11,587
	물엿	93,122		야자유	5,953
	과실음료	84,422		과실쥬스	5,419
	두류가공품	77,385		기타	32,396
곡류가공품	70,790	합계	1,299,906		
기타	739,010	과·채가공품	603,816		
합계	4,070,861	과·채페이스트	152,630		
중 국	곡류가공품	998,864	터 키	압착올리브유	25,909
	두류가공품	332,589		농축과실즙(또는과실분)	19,250
	침출차	212,874		박력밀가루	2,083
	당면(전면류)	147,563		중력밀가루	2,083
	기타가공품	64,415		강력밀가루	2,033
	기타식용유지	52,503		과·채푸레	702
	가공곡류차	39,867		과실음료	240
	기타단일침출차류	33,933		과실쥬스	240
	녹차	18,761		기타	66
	혼합침출차	13,333		합계	809,052
기타	31,293	과·채가공품	505,686		
합계	1,945,995	과·채페이스트이외의과실양조식초	21,853		
호 주	강력밀가루	803,887	독 일	곡류가공품	11,710
	두류가공품	588,210		과실쥬스	11,415
	중력밀가루	305,033		침출차	7,609
	박력밀가루	76,700		스파게티	6,444
	두류가공품(대두분)	53,447		잼	6,428
	국수	31,077		유화형드레싱	6,399
	곡류가공품	24,800		과자	5,792
	토마토케첩	17,830		소스류	5,615
	두유	7,880		기타	51,434
	갈색설탕	7,200		합계	640,394
기타	17,172	과·채가공품	354,467		
합계	1,933,236	당류가공품	110,833		
브 라 질	갈색설탕	969,502	파 라 과 이	기타가공품	110,637
	과·채가공품	268,341		백설탕	58,667
	흑설탕	125,543		기타	-
	당류가공품	40,000		합계	634,604
	기타설탕	14,958		정제포도당	172,350
	팜올레인유	4,599		덱스트린	107,467
	인스턴트커피	3,734		함수결정포도당	63,000
	팜유	3,116		물엿	3,283
	코코아분말	2,867		분말·결정포도당	3,000
	기타코코아가공품류	2,176		침출차	1,150
기타	3,415	곡류가공품	488		
합계	1,438,251	리	조콜릿가공품	323	
태 국	백설탕	293,334	아	조콜릿	315
	기타코코아가공품	402		감식초이외의과실양조식초	300
	합계	293,736		기타	339
기타	합계	1,724,687	합계	352,015	
		총 계			15,142,737

## 부록 2

## 미국 유기농산물 생산 및 수출현황

부표 2-1. 미국 유기농업 품목별 인증면적 추이

단위: 에이커, %

품목	인증면적				경지면적	유기 비중	연평균	
	1995	2000	2005	2008	2008			
총면적	427,250 (100.0)	1,108,840 (100.0)	1,696,741 (100.0)	2,513,518 (100.0)	365,387,027	0.7	10.8	
곡물	소계	226,950 (53.1)	417,722 (37.7)	571,838 (33.7)	813,038 (32.3)	174,262,760	0.5	8.7
	옥수수	32,650	77,912	130,672	194,637	93,600,000	0.2	12.1
	밀	120,800	206,474	293,824	415,902	60,433,000	0.7	9.1
	귀리	13,250	29,771	46,465	57,374	3,760,000	1.5	8.5
	보리	17,150	41,904	39,271	46,954	4,020,000	1.2	1.4
	수수	-	1,602	6,042	16,068	7,718,000	0.2	33.4
	쌀	8,400	26,870	26,428	49,638	2,761,000	1.8	8.0
	기장	18,550	15,103	14,175	11,953	570,000	2.1	-2.9
	메밀	13,250	10,599	6,364	8,653	24,760	34.9	-2.5
호밀	2,900	7,488	8,597	11,859	1,376,000	0.9	5.9	
콩류	소계	53,100 (12.4)	160,225 (14.4)	150,536 (8.9)	159,073 (6.3)	65,728,900	0.2	-0.1
	콩	47,200	136,071	122,217	125,621	63,631,000	0.2	-1.0
	말린콩	-	14,010	10,561	16,465	1,526,900	1.1	2.0
	말린완두콩	5,900	10,144	17,757	16,987	571,000	3.0	6.7
지방 종자	소계	20,050 (4.7)	44,417 (4.0)	36,930 (2.2)	40,331 (1.6)	2,422,000	1.7	-1.2
	아마	5,850	25,076	30,843	21,554	354,000	6.1	-1.9
	해바라기	14,200	19,342	6,087	18,777	2,068,000	0.9	-0.4
견과야채	모든 유형	84,100 (19.7)	231,207 (20.9)	411,342 (24.2)	793,442 (31.6)	61,625,000	1.3	16.7
채소	소계	- (0.0)	82,480 (7.4)	122,903 (7.2)	214,336 (8.5)	2,938,450	7.3	12.7
	토마토	-	3,063	6,655	9,237	432,800	2.1	14.8
	상치	-	11,410	11,986	27,796	361,000	7.7	11.8
	당근	-	5,665	5,737	12,415	99,630	12.5	10.3
	모든채소	-	62,342	98,525	164,888	2,045,020	8.1	12.9
과일	소계	- (0.0)	76,302 (6.9)	158,987 (9.4)	221,375 (8.8)	7,133,135	3.1	14.2
	견과류	-	4,468	15,986	23,307	988,100	2.4	22.9
	감귤류	-	6,509	10,152	14,065	856,200	1.6	10.1
	사과	-	9,270	12,772	17,626	381,160	4.6	8.4
	포도	-	12,575	22,800	28,289	934,750	3.0	10.7
	딸기류	-	-	-	8,138	92,530	8.8	-
	아열대과일	-	-	-	8,884	41,085	21.6	-
기타	-	43,481	97,277	121,066	3,839,300	3.2	13.7	
향료 등	향료 등	- (0.0)	4,288 (0.4)	5,250 (0.3)	5,729 (0.2)	98,933	5.8	3.7
기타	소계	43,050 (10.1)	92,198 (8.3)	238,955 (14.1)	266,194 (10.6)	51,177,849	0.5	14.2
	면화	32,850	15,027	9,537	15,377	10,830,300	0.1	0.3
	평콩	-	2,085	11,940	16,776	1,230,000	1.4	29.8
	감자	-	5,433	6,581	8,273	1,148,800	0.7	5.4
	단풍시럽	10,200	11,965	12,247	31,340	-	-	12.8
	휴작작물등	-	57,688	198,650	194,428	37,968,749	0.5	16.4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8년임.  
 자료: 1995, 국제농업시스템; 1997-2008, USDA, ERS.

부표 2-2. 미국의 유기농산물 지역별 수출규모

단위: 백만달러

	카리브해	중앙아메리카	동아시아	유럽유니온-27	구소비에트유니온-12	중동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기타유럽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남동아시아	사하라남부아프리카	합계
상치(결구상치제외),Fr/Ch	0.1	0.0	1.3	-	-	-	49.2	-	0.0	-	-	0.1	-	50.7
체리,신선	0.0	-	16.2	1.9	-	-	2.1	2.8	-	0.3	0.1	1.3	-	24.7
사과,신선	0.1	0.1	0.5	0.0	0.0	0.6	19.4	-	-	0.2	1.0	0.1	-	22.2
케첩 등 토마토 소스	0.0	0.0	0.9	0.1	-	0.3	15.2	0.4	-	0.1	-	0.0	-	17.1
당근,Fr/Ch	0.0	0.0	0.0	0.0	-	-	15.2	-	-	0.2	-	-	-	15.5
블루베리,신선	0.0	-	0.2	0.0	-	-	14.7	-	-	0.0	-	-	-	14.9
시금치,Fr/Ch	-	-	-	-	-	-	12.2	-	-	-	-	-	-	12.2
오렌지,Fr/Dr	0.0	0.0	4.5	0.1	-	-	4.6	0.0	-	-	1.6	1.2	-	12.0
꽃양배추,Fr/Ch	0.1	0.0	6.5	0.0	-	-	3.3	-	-	-	-	0.0	-	9.9
딸기,신선	0.0	-	0.1	0.3	-	-	9.2	-	-	0.0	-	0.0	-	9.5
볶은커피두(카페인제거커피제외)	0.0	0.1	1.0	1.2	-	0.2	4.7	-	0.0	-	0.0	0.0	0.0	7.4
브러콜리,Fr/Ch	0.1	0.0	3.8	-	-	-	1.8	-	-	0.0	-	-	-	5.7
레몬,Fr/Dr	0.0	0.0	0.3	-	-	-	3.5	-	-	0.1	-	-	-	4.0
샐러리,Fr/Ch	-	-	1.0	-	-	-	2.3	-	-	-	-	0.3	-	3.6
포도,신선	0.0	0.0	1.1	-	0.0	-	1.2	0.9	-	0.1	-	0.1	-	3.6
배/마르멜로,신선	0.0	-	-	-	-	-	2.4	0.0	-	-	-	-	-	2.5
토마토기타,Fr/Ch	0.1	-	0.0	-	-	-	1.8	-	-	-	-	-	-	1.9
고추, Fr/Ch	0.1	0.0	0.1	0.1	-	0.0	1.2	-	-	0.0	-	-	-	1.4
감자,Fr/ChXsdOth	0.0	0.0	0.0	-	0.0	-	1.1	-	-	-	-	-	-	1.2
결구상치,Fr/Ch	0.1	0.0	0.1	-	-	0.0	0.9	-	-	-	-	-	-	1.1
체리토마토,Fr/Ch	-	-	0.2	0.0	-	-	0.7	-	-	-	-	0.1	-	0.9
로마플럼토마토,Fr/Ch	0.0	-	-	-	-	-	0.8	-	-	0.0	-	-	-	0.8
양파(OnionSets),Fr/Ch	0.0	0.0	0.1	0.0	-	-	0.1	0.0	-	0.0	-	-	-	0.2
총합계	0.9	0.3	37.9	3.8	0.1	1.2	167.6	4.2	0.0	1.0	2.6	3.3	0.0	222.8

### 부록 3

##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한 수입현황

부표 3-1.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한 수입 현황

국가별	직접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한 수입		동등성이 인정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한 수입	
	국내	국외	인정협정 (Recognition Agreement)	동등협정 (Equivalence Agreement)
우리나라	<6개 인증기관>	<4개국 4개 인증기관> 네덜란드(1),프랑스(1),호주(1),독일(1) *표시제: 31개국 345개소	-	-
미국	<53개 인증기관>	<22개국 41개 인증기관> 아르헨티나(4),알메리아(1),호주(4),오스트리아(1),벨기에(1),볼리비아(1),브라질(1),캐나다(2),코스타리카(1),이집트(1),프랑스(1),독일(4),그리스(2),과테말라(1),이탈리아(6),일본(1),멕시코(1),네덜란드(1),페루(1),스페인(3),스위스(2),터키(1)	<6개국 30개 인증기관> 영국(9),덴마크(1),인도(11),이스라엘(3),일본(3),뉴질랜드(3)	<1개국> 캐나다

부표 3-1.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한 수입 현황(계속)

국가별	직접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한 수입		동등성이 인정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한 수입	
	국내	국외	인정협정 (Recognition Agreement)	동등협정 (Equivalence Agreement)
EU	<197개 인증기관>	<20개국 43개 인증기관> 아르헨티나(3),호주(3),볼리비아(2),브라질(1),캐나다(4),칠레(1),중국(1),코스타리카(1),이집트(2),과테말라(1),인도(2),멕시코(1),뉴질랜드(1),노르웨이(1),페루(1),한국(1),대만(1),터키(3),우크라이나(2),미국(11)	<9개국 58개 인증기관> 아르헨티나(4),호주(6),코스타리카(4),인도(16),이스라엘(4),일본(13),스위스(4),뉴질랜드(3),튀니지(4)	-
일본	<60개 인증기관>	<9개국 19개 인증기관> 이탈리아(5),미국(3),호주(3),뉴질랜드(2),독일(2),멕시코(1),캐나다(1),스위스(1),네덜란드(1)	<32개국> EU27개국,미국,아르헨,호주,뉴질랜드,스위스 *별도 인증기관 지정은 없음(수출국에서 증명서를 첨부)	-



## 참고 문헌

- 국회. 2011. 「유기식품에 대한 외국과의 동등성 도입 문제는 없는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김우선 외 6인. 2004. 「유기식품 인증제도 도입 및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창길 외 3인. 2010. 「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08. 「유기가공식품인증제」.
- 닐슨컴퍼니코리아. 2011. 「국내·외 유기식품 산업 현황 조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박민규 외 3인. 2009. 「외국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연구원.
- 박민규 외 2인. 2010. 「유기식품 인증 통합 연구」. 농수산물유통공사.
- 박민규. 2011. “수입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 99호.
- 박성훈. 2009.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8(1): 10-18.
- 신용광, 황윤재. 200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학균, 장정경. 2011.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 분석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윤미 외 4인. 2006. 「유기식품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 연구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완형. “유기식품 동등성 규정, 실효성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2011. 8. 11.
- 최세균, 이대섭. 2007.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2008. 「유기식품 시장동향 2008」.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 Catherine Greene et al. 2009. “Emerging Issues in the U.S. Organic Industry.” USDA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55.

IFOAM. 2010.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Codex Alimentarius. 2007.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Marketing and Labell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2007e.

---

C2011-33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분석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1.

발 행 2011. 11.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mailto: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